



Doing Business in Vietnam 2025-2026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약어

ABV	알코올 도수	HI	건강보험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HS	품목분류를 위한 조화시스템(HS 코드)
APA	사전가격합의	IAS	국제회계기준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IFRS	국제재무보고기준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IMF	국제통화기금
BCC	사업협력계약	IP	산업단지
BLT	건설-임대-양도	IRC	투자허가서
BOO	건설-소유-운영	JSC	주식회사
BOT	건설-운영-양도	M&A	인수합병
BT	건설-양도	MFN	최혜국 대우
BTL	건설-양도-임대	MOF	재무부
BTO	건설-양도-운영	MPI	기획투자부
BTU	영국 열량 단위	O&M	운영·관리
CAGR	연평균성장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CIT	법인세	PCA	사후통관심사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PE	고정사업장
DTA	이중과세방지협정	PIT	개인소득세
EBITDA	이자·세금·감가상각·상각 전 이익	PPP	민관협력
EIU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R&D	연구개발
EPE	수출가공기업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EPT	환경보호세	RO	대표사무소
EPZ	수출가공구역	SEA	동남아시아
ERC	사업등록증명서	SHUI	사회·건강·실업보험
EU	유럽연합	SI	사회보험
EZ	경제구	SST	특별소비세
FCWT	외국계약자원천징수세	UI	실업보험
FDI	외국인직접투자	USD	미국 달러
FIE	외국인투자기업	VAS	베트남 회계기준
FTA	자유무역협정	VAT	부가가치세
GDP	국내총생산	VND	베트남 동화
GSO	통계총국	WCO	세계관세기구
HCFC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로-탄소	WTO	세계무역기구

소개

베트남은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 1억 명이 넘는 인구, 그리고 전략적 위치를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제조업, 전자, 섬유, 농업을 주요 GDP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기반 위에서 베트남은 경제적 역풍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여 2024년에 7.1%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에는 GDP 성장 목표를 8.3~8.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불확실성과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하며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86년 도이머이(Doi Moi, 쇄신) 개혁은 베트남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은 2010년에 하위 중소득국 지위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는 발전 궤도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지위를 달성하고, 2045년까지 고소득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세계 30대 경제 대국 반열에 오르고 2050년까지 Net-zero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 비전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베트남은 행정 효율성 제고, 경제 경쟁력 강화, 국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혁으로는 성 단위 행정구역 축소 및 군 단위 폐지를 통한 2단계 행정체계 도입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성과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법률·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행정 간소화 및 경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독자에게 베트남의 투자 환경, 기업 형태, 조세 제도, 회계 및 기업 관행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하여 베트남 외교부와 Deloitte 베트남이 공동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작성 시점에서 가능한 한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으나, 베트남의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해 법률과 규정이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거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확정적인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안내서가 귀사의 베트남 내 사업 확장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외교부 Nguyen Minh Hang 차관님의 인사말



첫째, 지정학적 변화는 베트남의 기회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비용 상승, 글로벌 갈등, 공급망의 회복력 및 다변화에 대한 수요 증대는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제조 거점을 전략적으로 베트남과 아세안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인건비,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강점을 토대로 새로운 투자처로서 뚜렷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교역과 경제 역동성입니다. 베트남은 17건의 양자·다자 및 차세대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와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모두에게 국제 시장 접근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디지털화, 기술 발전, 성장하는 소비계층, 탈탄소화 전환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여 향후 혁신과 녹색 성장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입니다. 제13차 당 대회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개발도상국 지위 달성,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당, 정부, 국회, 그리고 지방 당국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최우선 정책 과제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당과 정부의 지침 아래, 외교부는 경제외교를 베트남 외교의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 여기며, 국가의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자 관계의 심화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2025년 5월 현재 베트남은 13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은 중동 시장으로의 심층적 통합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트남 외교는 기술, 반도체, 혁신 분야에 특히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글로벌 파트너 및 대기업들과 수많은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선도 기술기업들은 공급망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연구 센터를 설립하며, 투자·사업·생산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베트남은 반도체 분야에서 총 174건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며, 총 등록 자본금은 약 116억 미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 유입은 최근 몇 년간 하이테크 산업 유치를 위한 베트남의 전방위적 노력을 반영하며,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통합을 추진한다는 베트남의 장기적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제 57-NQ/TW 호 및 제 59-NQ/TW 호 결의안에 제시된 전략적 목표와 긴밀히 부합하는 성과입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현대적인 법적 체계 구축을 위한 제66-NQ/TW호 결의안, 민간 부문 발전 가속화를 위한 제68-NQ/TW호 결의안과 함께,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들은 베트남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엔진이 되는 네 가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께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성장해 나가며, 특히 전략적·기술적 제품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의 고품질 허브로 만들어 가는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환영합니다. 본 간행물이 독자 여러분께 베트남 경제의 전망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베트남은 새로운 성장의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독자분들께,

도이머이(Doi Moi) 개혁은 지난 38년간 베트남의 눈부신 도약을 이끌어 내며,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 사회·경제 발전의 선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변동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베트남은 뛰어난 회복력을 발휘하였고, 2024년에는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입을 바탕으로 7.09%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강력한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날 아세안(ASEAN)은 어려운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성장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세안의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4.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으로 향하는 역동적인 발전 동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전체, 그리고 특히 베트남의 미래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베트남 경제 개요	07
I. 베트남 한눈에 보기	08
1. 국가 개요	08
2. 전략적 위치	08
II. 세계적 주목을 받는 투자처	09
III. 거시경제 성과	13
1. 성장하는 경제 환경	13
2. 글로벌 역풍 속에서도 견고한 수출	16
3. 경제 구조 전환	18
4.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 환경	20
제2장: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형태	23
I. 베트남의 투자 유형	24
II.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	25
III. 베트남 내 사업 주재 설립을 위한 주요 절차	28
제3장: 회계 및 감사 요건	30
제4장: 세무 및 관세	34
I. 조세 제도	35
II. 법인세 (CIT)	36
1.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44
베트남 내 실행계획	
2. 개인소득세(PIT)	46
3. 사회·건강·실업보험 (SHUI)	50
3. 부가가치세 (VAT)	51
4. 외국계약자원천징수세 (FCWT)	55
5. 기타 세목	58
II. 관세 및 절차	60
제5장: 외환 관리	65

제1장: 베트남 경제 개요



I. 베트남 한눈에 보기

1. 국가 개요

국토 면적	331,338 km ²
인구	101.3 million
해안선 길이	3,260 km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024년)	7.09%
1인당 GDP (2024년)	USD 4,700
평균 물가상승률 (2024년)	3.63%
최저임금 (2024년)	VND 4,960,000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테러 부재 (백분위 순위, 2023년)	45/100

출처: GSO, World Bank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로 꼽히는 아세안 국가이자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투자, 견고한 내수, 확대되는 중산층, 그리고 수출 주도형 산업에 의해 견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경제 구조 전환은 1986년 제6차 당 대회에서도 도입된 도이머이(Doi Moi) 정책에 주로 기인합니다. 이 정책은 베트남의 역사적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여, 높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사회·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고, 국제 관계를 확대하며, 나아가 세계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는 수년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GDP 성장률은 7.09%로 가속화되었으며, 2025년에는 최소 8.0%의 목표 달성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피치(Fitch Ratings)는 베트남의 외화표시 장기 발행자 신용등급(Long-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을 'BB+'로 유지하고,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평가하였습니다¹.

앞으로 단기적으로 베트남의 우선 과제는 소득 증대, 가치사슬 고도화, 양질의 의료 및 교육 접근성 제고, 그리고 도시 환경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2035년까지 중상위 소득국 지위 달성, 2045년까지 고소득국 진입, 그리고 탄소 발자국 감축과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Net-zero 실현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베트남의 기업 환경 또한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기업 환경 평가에 따르면, 베트남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82개 경제권 가운데 기업 환경 조건이 가장 크게 개선된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아가 2023년부터 2028년 기간에도 기업 환경 개선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².

2050년을 향한 경제 발전 이정표



1. "Fitch Affirms Vietnam at 'BB+'; Outlook Stable". Fitch Ratings 2024년 6월 28일.

2. "Vietnam is the most improved place to do business, according to EIU's Business Environment Rankings". The Economist Group. 2024년 10월 10일.

II.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대표적 투자처



베트남 경제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안정적인 경제 중 하나입니다. 견조한 GDP 성장 전망, 급속히 확대되는 중산층, 높은 민간 소비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와 전략적 경쟁력이 결합되어 베트남을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 대상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베트남의 탄탄한 비즈니스 기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베트남의 주요 강점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안정성, 전략적 위치와 발전하는 인프라,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갖춘 허브, 그리고 역동적인 소비 시장과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 포함됩니다.

2.1. 정치적 안정성

베트남의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성은 경제 성장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정치적 안정성 및 폭력·테러 부재 지수(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Index)에서 베트남은 2023년 기준 45번째 백분위에 해당하여 중간 수준의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도부 교체와 반부패 조치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여전히 안정을 유지하고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최근의 변화로는, 베트남 정부가 주요 국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운영을 간소화하고 행정 중복을 제거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2025년 2월, 국회는 2021-2026년 임기의 정부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제176/2025/QH15호 결의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기존 18개 부처와 4개 부처급 기관에서 14개 부처와 3개 부처급 기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부처와 기관들은 2025년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통합 및 폐지와 더불어, 성과 중앙 직할시의 총 개수도 63개에서 34개로 감소하였습니다.

2.2. 전략적 위치 및 발전하는 인프라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의 해안선은 유럽과 인도양에서 동북아시아로 이어지는 주요 해상 경로에 걸쳐 있습니다. 총 3,260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은 수많은 국제 해상 운송로와 인접해 있어, 베트남은 해상 상업의 이상적인 허브로서 기업들에게 글로벌 운송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산업통상부가 발간한 「2024 물류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수출입 화물의 90%가 해상 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화물 처리량 기준으로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만 인프라는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으며, 「2021-2030년 베트남 항만체계 개발 마스터플랜(2050년 비전 포함, 승인본)」에 따르면, 항만체계에 대한 투자 수요는 2030년까지 약 3,130조 VND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베트남 항만 개발 전략의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Can Gio 국제 환적항으로, 이는 호찌민시가 글로벌 해상 허브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은 도로, 철도, 항공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현대적이고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베트남의 목표는 총 9,014킬로미터에 달하는 41개의 고속도로, 6,354킬로미터를 연결하는 25개의 철도 노선, 그리고 33개의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리적 위치와 자연적 특성은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 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인기 있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 내 소비와 부채출을 증대시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프라



2.3.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갖춘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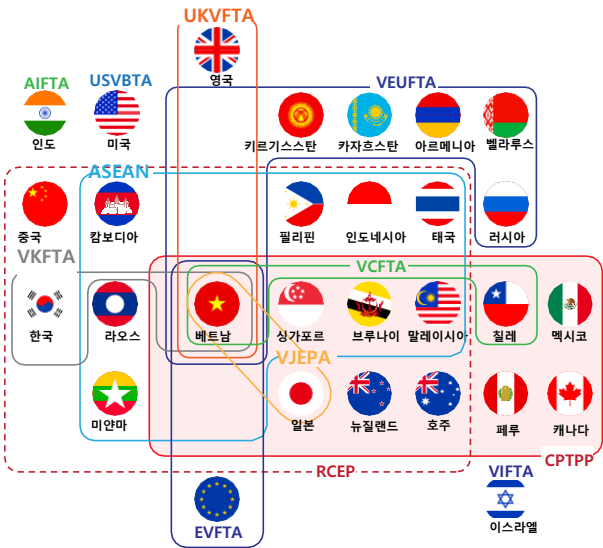
베트남은 경제외교를 한 축으로 하는 다자간 외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리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베트남은 역내 및 글로벌 시장과의 통합을 심화시키며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베트남은 1995년 아세안(ASEAN), 199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여 무역 자유화와 경제 확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이행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베트남은 총 17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16건이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그 중 포괄적·점진적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차세대 FTA들은 베트남이 주요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무역 관계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는 베트남-EFTA FTA와 아세안-캐나다 FTA 등 2건의 추가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TA에 따른 약속은 다양하며, 관세 인하를 비롯해 광범위한 사안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즉시 시행되고, 일부는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일정한 자격 요건에 의해 규율됩니다. 상품 무역과 관련하여, FTA는 베트남과 협정 상대국에 비(非) FTA 국가와 비교할 때 더 우대적인 시장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FTA에는 서비스 무역 시장 접근성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 무역기술장벽(TBT) 제한, 그리고 당사국 간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는 전 세계 경제의 87%를 포괄함



출처: World Bank, 베트남 2045 Trading Up in a Changing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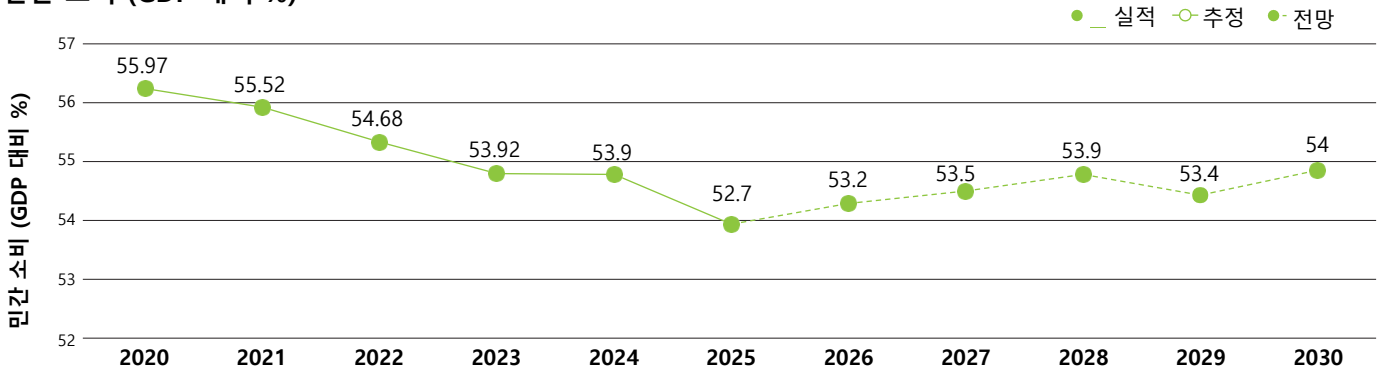
2.4. 역동적인 소비 시장과 경쟁력 있는 노동력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인구는 약 1억 13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이른바 "인구 황금기" 구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학적 이점은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에 방대한 소비 시장과 건고한 노동력을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인구 역학은 베트남을 투자, 제조업,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 GDP 대비

수년간 민간 소비는 베트남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 시장의 개선은 민간 소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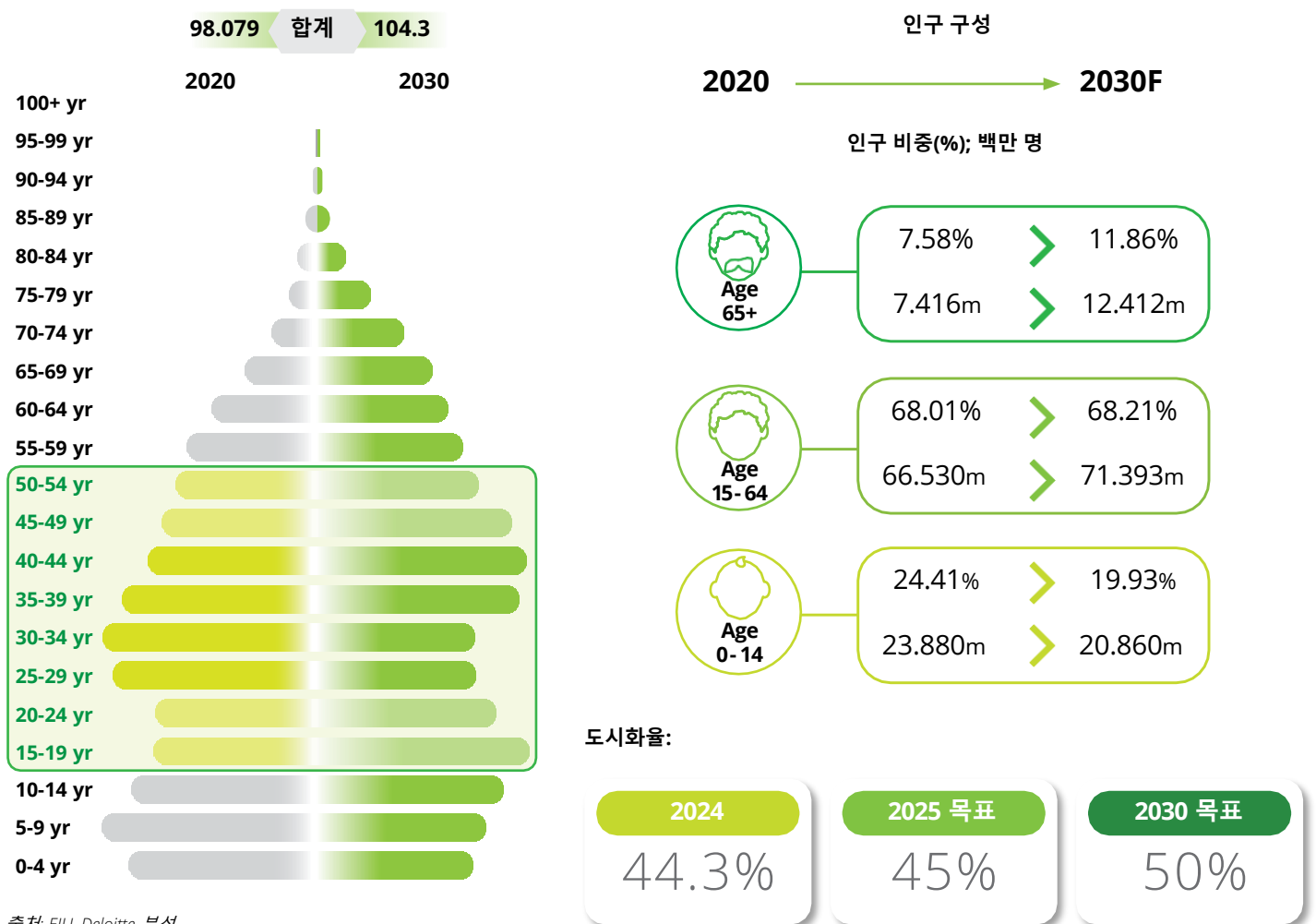
민간 소비 (GDP 대비 %)



출처: EIU, Deloitte 분석

베트남의 인구 황금기 구조와 가속화되는 도시화는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2월 기준 베트남의 도시화율은 44.3%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45%, 2030년에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완전한 중소득국 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시 지역은 2025년까지 GDP의 75%, 2030년까지는 최대 85%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노이와 호찌민시와 같은 주요 도시가 도시 성장을 주도해왔으나, 향후에는 칸토, 다낭, 하이퐁과 같은 중견 도시로의 확장이 예상되며, 이들 도시의 성장하는 중산층이 소비를 견인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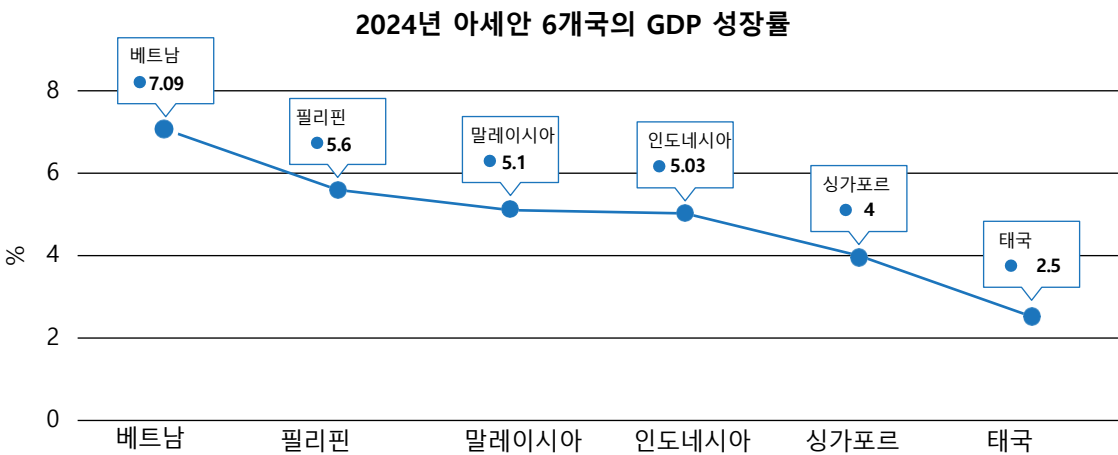
베트남은 다른 지역 시장과 비교해도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혁신 연구소가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제 기반과 확대되는 디지털 환경 덕분에 글로벌 자본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핀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와 같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거시경제 성과

3.1. GDP 성장

베트남은 2024년에 추정 국내총생산(GDP)이 4,763억 미 달러에 달하고 성장률이 7.09%에 이르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로써 베트남은 아세안 6개국(ASEAN-6)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장은 글로벌 경제·정치 환경의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를 고려할 때 더욱 두드러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⁴



비고: 아세안 6개국의 경제 데이터는 별도로 발간되었습니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은 모두 베트남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약 6%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이 아세안 6개국(ASEAN-6) 가운데 경제 발전 측면에서 선도적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실질 GDP 성장률 전망

	2024			2025F			2026F		
	WB	IMF	ADB	WB	IMF	ADB	WB	IMF	ADB
인도네시아	5.0	5.0	5.0	4.7	4.8	5.0	4.8	4.8	5.1
말레이시아	5.1	5.1	5.1	3.9	4.5	4.3	4.3	4.0	4.2
필리핀	5.7	5.7	5.6	5.3	5.5	5.6	5.4	5.9	5.8
태국	2.5	2.5	2.5	1.8	2.0	1.8	1.7	1.7	1.6
싱가포르	N/A	4.4	4.4	N/A	2.0	1.6	N/A	1.9	1.5
베트남	7.1	7.1	7.1	5.8	5.2	6.3	6.1	4.0	6.0
글로벌	2.8	3.3	N/A	2.3	3.0	N/A	2.4	3.1	N/A

비고:
세계은행(WB)은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으며, 2024년 자료는 추정치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일반적으로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출처: World Bank, IMF, A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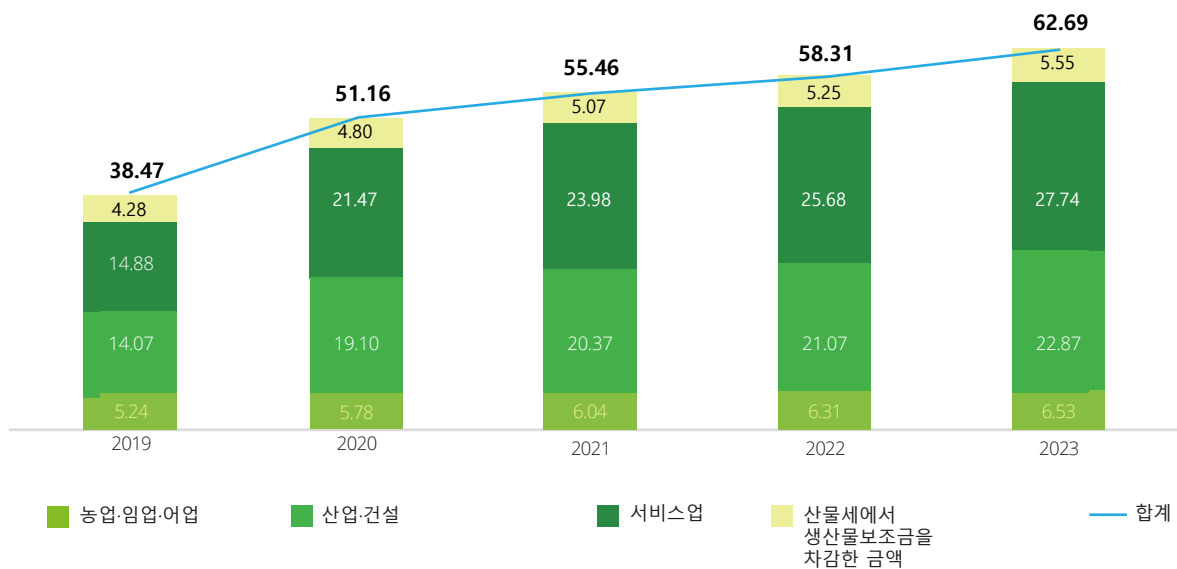
4. "Vietnamese economy ranks fourth in ASEAN". Government News. 21 Feb 2025.

2010년 불변가격 기준 GDP 부문별 구성 (VND billion)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농업에서 보다 생산성이 높은 산업 및 서비스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에 의해 견인되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발전 경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젊고 증가하는 노동 인구의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은 국내 민간 투자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주요 모든 부문에서 GDP 성장이 개선되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부문별 구성은 산업·건설 부문과 서비스 부문이 대체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건설 부문은 8.55% 성장하여 GDP의 36.48%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 부문은 8.01% 성장하여 GDP의 44.25%를 기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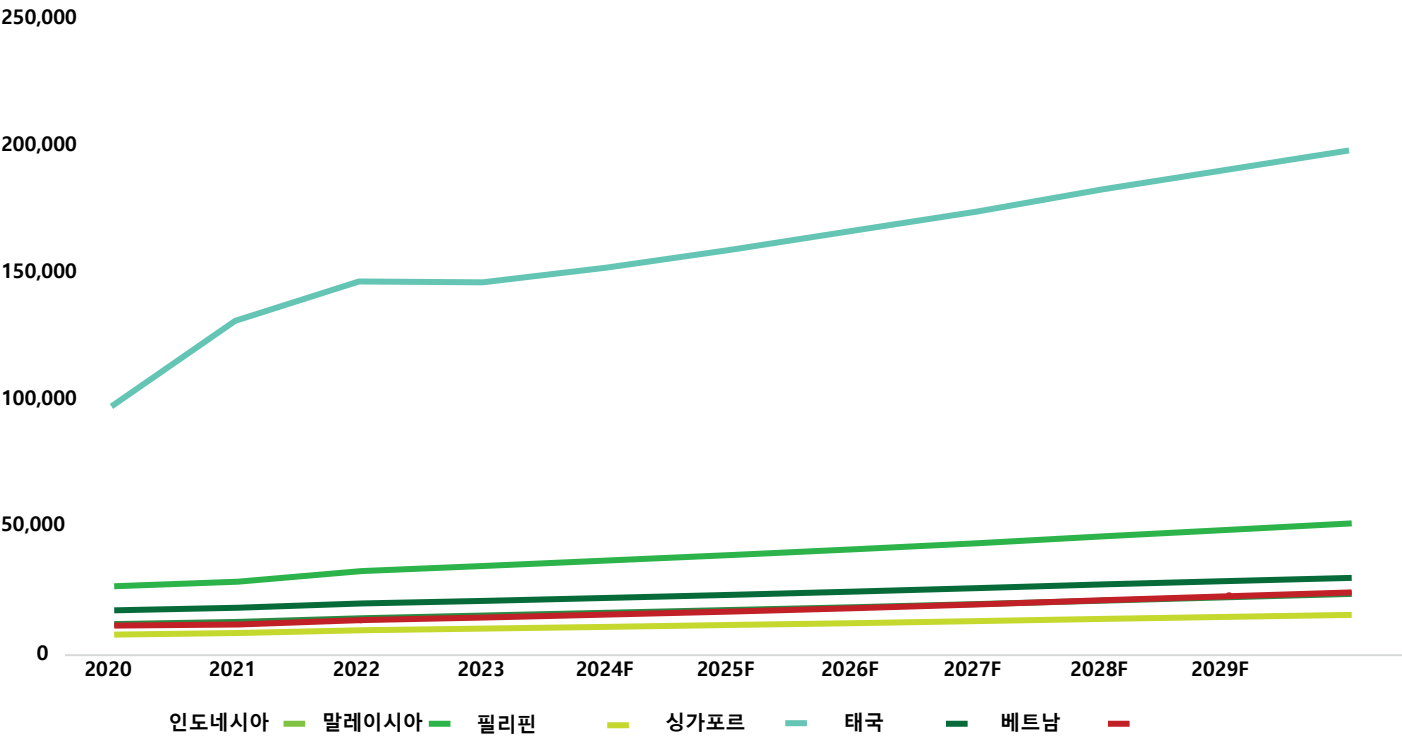
2010년 불변가격 기준 GDP 부문별 구성 (VND billion)



출처: GSO, Deloitte 분석

1인당 GDP (PPP 기준, USD)

1인당 GDP 측면에서 베트남은 아세안 6개국(ASEAN-6)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평균 약 7.07%에서 7.87%의 증가율이 전망되며, 같은 기간(2020~2030년) 역내 평균 성장률은 3.8%에서 5.19% 수준으로 일관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EIU, Deloitte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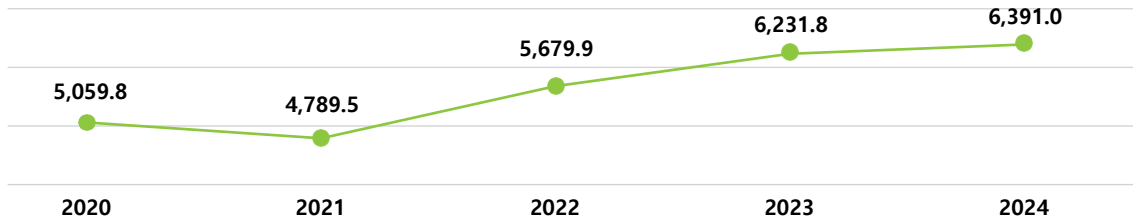
3.2. 산업 하이라이트

소비재

베트남의 소비재 부문은 수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소비는 GDP의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대규모이면서 젊은 소비자층, 확대되는 중산층, 빠른 도시화, 그리고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견인되고 있습니다. World Data Lab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소비 시장으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 인구는 8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4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베트남의 상품 및 소비 서비스 총 소매판매액은 최근 몇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한 감소 이후 강하게 반등하였습니다. 2024년 소매판매액은 6,391.0조 VND에 달해 2023년 대비 9.0% 증가하였습니다.

2020-2024년 베트남의 상품 및 서비스 소매판매액 (VND trillion)



출처: GSO, Deloitte 분석

이 산업의 두드러진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핵심 구성 요소인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입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 부문은 연간 18~25%의 인상적인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3년 대비 20% 증가하여 2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국 소비재 및 서비스 총 소매판매의 약 9%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체 인구의 55%가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문의 총거래액(GMV)은 2030년까지 6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 강화, 시장 접근성 개선, 디지털 결제 도입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베트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금융 서비스 부문은 2024년에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장은 중요한 자본 동원 채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2023년 말 대비 신용 성장률은 15.08%에 달했습니다. 금융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선제적이고 유연한 통화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신용기관 및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주요 법률 개정으로 규제 환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금융 환경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수년간 두드러진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무현금 경제의 확대입니다. 무현금 거래는 17 billion 건을 넘어섰으며, 총 거래 가치는 약 VND 280 trillion에 달하여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은행들은 전체 거래의 95% 이상이 디지털 채널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금융으로의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E-Conomy SEA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의 총거래액(GTV)은 2030년에 약 USD 300-350 billion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금융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견고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사이버 보안 강화, 금융 범죄 예방, 외국인 투자자 참여 확대, 그리고 금융 통합 촉진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2025년에 베트남은 주식시장을 프런티어(Frontier) 시장에서 신흥(Emerging) 시장으로 격상하여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2024년 말에 일부 진전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개정된 회계법은 베트남 시장의 특정 조건에 기반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의 채택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책임을 재무부에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제68/2024/TT-BTC호 시행규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베트남으로의 자본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 통합 측면에서, 국회는 제222/2025/QH15호 결의를 승인하여 베트남 내 국제금융센터(IFC)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은 지역 및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5. "베트남, 세계 20대 소비시장 진입 전망", VnEconomy, 2024년 2월 19일.

6. "베트남 전자상거래 2024: 성과와 과제",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2025년 2월 18일.

7. 결정 제645/QĐ-TTg호 (2020년): 국가 전자상거래 개발계획 2021-2025.

8. e-Conomy SEA 2024. Google, Temasek, Bain & Company.

9. "베트남 금융시장 전망 2025", 『Tap chí Tài chính』(재정잡지), 2025년 2월 17일

부동산 부문

부동산 부문을 살펴보면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중개업협회(VARS)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상품의 총공급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2024년 9월 기준 부동산 신용 성장률이 전체 신용 성장률을 상회하며 연초 대비 9.15%에 도달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신용은 16% 확대되어 주거용 부동산 신용 성장률인 4.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당국은 「부동산사업법」, 「주택법」, 「토지법」 등 주요 법률 개정을 앞당겨 2024년 8월, 예정된 시점보다 5개월 빠르게 시행하였습니다. 동시에 금리 인하와 신용 지원 등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 심리와 수급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자원·산업

베트남의 에너지 및 전력 수요는 경제 성장 목표 달성과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 시장이 되었습니다. 2025년 전망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12~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2,200~2,500 MW의 추가 발전 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2035년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최대의 재생에너지 시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뒤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치는 글로벌 트렌드, 증가하는 전력 수요, 천연적 이점,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결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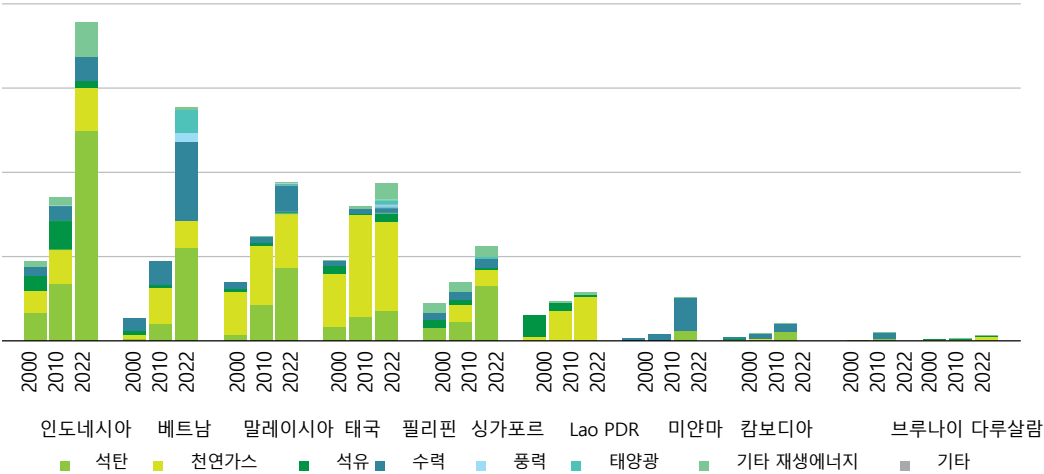
이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는 2025년 4월 15일에 발표된 국무총리 결정 제768/QĐ-TTg호로, 개정된 국가 전력 개발계획 VIII(PDP8)을 승인한 것입니다. 앞서 2023년 5월에 결정 제500/QĐ-TTg호로 제정된 원안 PDP8은 2021~2030년 기간(2050년까지의 비전 포함) 동안 베트남 영토 내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산업·서비스, 220kV 이상 전압 수준의 전력원 및 송전망 개발 전략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PDP8은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의 설비 목표를 상향하고, 원자력을 에너지 믹스에 포함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계획 기간을 기존 2021~2030년에서 2025~2030년으로 변경하고, 2031~2035년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재생에너지 기여도를 우선시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결의를 반영한 것으로,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74~75%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친화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제768호 결정은 해당 부문으로의 자본 유입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 수요 측면에서, 개정된 계획은 2026~2030년 기간 동안 발전 및 송전망 개발에 약 USD 136.3 billion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31~2035년에는 약 USD 130 billion, 2036~2050년에는 약 USD 569.1 billion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현대화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전력 시장이며, 전력 생산 믹스는 주로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및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2000-2022년)



비고: TWh = 테라와트시입니다.
"기타 재생에너지"에는 바이오에너지, 지열, 집광형 태양열, 해양에너지가 포함됩니다.
"기타"에는 비재생 폐기물 및 기타 에너지원이 포함됩니다.

출처: Southeast Asia Energy Outlook 2024

10. Southeast Asia Energy Outlook 2024.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11. "총리: 2025년 전력 수요가 약 12~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력 부족은 없을 것", VnEconomy, 2024년 10월 19일.

전력 생산 구성

베트남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PDP8) 및 개정 PDP8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설비용량 목표(MW)				2050년까지 설비용량 목표(MW)			
#	발전원	PDP8	비중 (%)	개정 PDP8	비중 (%)	PDP8	비중 (%)	개정 PDP8	비중 (%)
1	육상 풍력	21,880	14.5	26,066 - 38,029	14.2 - 16.1	60,050 - 77,050	12.2 - 13.4	84,696 - 91,400	10.9
2	해상 풍력	6,000	4.0	6,000 - 17,032	3.27 - 7.2	70,000 - 91,500	14.3 - 16.0	113,503 - 139,097	14.7 - 16.6
3	태양광	12,836	8.5	46,459 - 73,416	25.3 - 31.1	168,594 - 189,294	33.0 - 34.4	293,088 - 295,646	35.3 - 37.8
4	바이오매스/폐기물 발전/암모니아	2,270	1.5	3,009 - 4,881	1.6 - 2.0	31,647 - 38,447	5.5 - 7.8	32,875 - 35,359	4.2
5	수력	29,346	19.5	33,294 - 34,667	14.7 - 18.2	36,016	6.3 - 7.3	40,624	4.8 - 5.2
6	석탄	30,127	20.0	31,055	13.1 - 16.9	0	0	0	0
7	가스/수소	37,330	24.8	33,385 - 37,454	15.4 - 18.6	35,830 - 44,830	6.7 - 8.4	43,593 - 54,647	5.3 - 6.7
8	저장 전력 (양수 수력, 배터리 에너지 저장, 기타 에너지 저장 시스템)	2,700	1.8	12,400 - 22,300	6.8 - 9.4	30,650 - 45,550	6.2 - 7.9	116,674 - 117,447	14.9
9	기타 (열병합발전, 유연성 전원)원자력	3,000	2.0	2,000 - 3,000	1.1 - 1.3	35,400 - 50,700	7.1 - 9.0	21,333 - 38,641	2.8 - 4.6
10	원자력	0	0	4,000 - 6,400	2.2 - 2.7	0	0	10,500 - 14,000	1.4 - 1.7
11	수입 전력	5,000	3.3	9,360 - 12,100	4 - 5.1	11,042	1.9 - 2.3	14,688	1.8 - 1.9
합계		150,489		183,291 - 236,363		490,529 - 573,129		774,503 - 838,681	

비고: 강조 표시된 발전원은 개정 PDP8에서 크게 수정되었습니다.

디지털 경제

베트남은 국가 디지털화 프로그램, 2025년까지의 디지털 인프라 전략(2030년 지향) 등 여러 핵심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정책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정부 분야에서 베트남은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EGDI) ¹²에서 193개국 중 86위에서 71위로 상승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2024년에 GDP의 18.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2025년 2월 제10차 국가 디지털 전환위원회 회의 보고서 기준) 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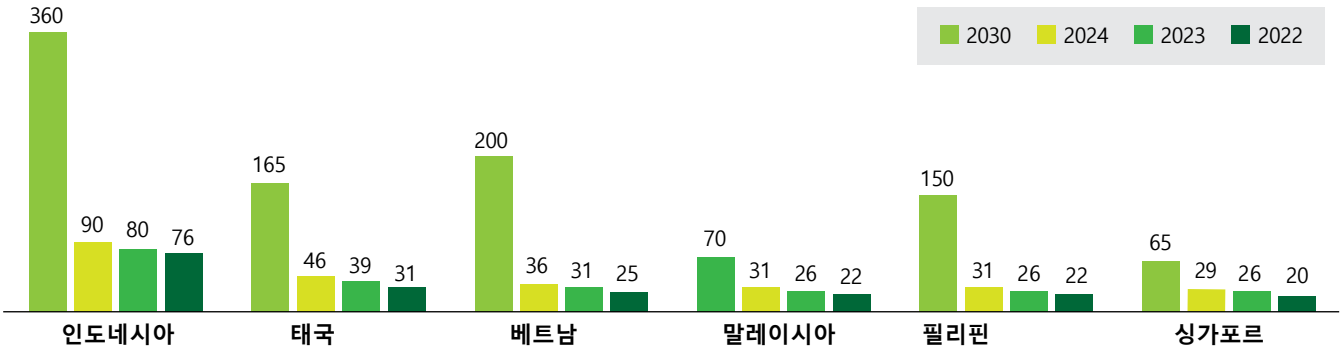
-Conomy SEA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디지털 경제 전체의 총거래액(GMV)은 2022년 250억 달러에서 2025년 약 900억~2,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베트남은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GDP의 25%, 2030년까지 30%를 차지한다는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의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태국에 이어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강력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2. 「베트남, UN 전자정부 발전 순위 15계단 상승」 - 과학기술부, 2024년 9월 19일.

13. 「베트남 디지털 경제 사상 최대 성장, GDP의 18.3% 차지」 - Vietnamnet, 2025년 2월 7일

디지털 경제의 GMV (USD billion)



출처: E-Conomy SEA 2024 report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베트남은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3년에 Decree No. 13/2023/ND-CP를 채택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러한 의지는 국제기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2024 Global Cybersecurity Index (GCI)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 세계 상위 50위권에 들었으며, 글로벌 사이버보안 분야의 선도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sia-Pacific 지역에서는 2024년 GCI 선도 그룹에 포함된 11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고, ASEAN 내에서는 Indonesia와 Singapore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GCI 2020 순위와 비교하면,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8계단 상승하였으며 ASEAN¹⁴ 내에서는 1계단 상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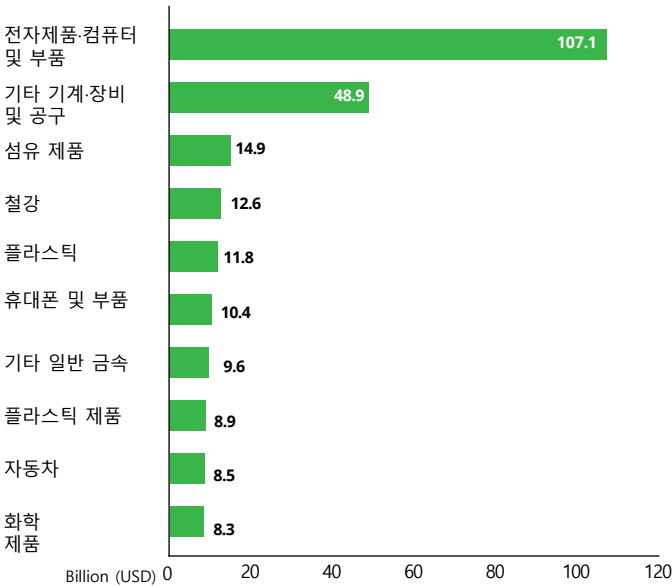
3.3. Trade highlight

베트남의 2024년 총 교역액은 786.29억 USD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역수지는 24.77억 USD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9년 연속 무역 흑자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경제 부문은 25.52억 USD 적자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 투자 부문(crude oil 포함)은 50.29억 USD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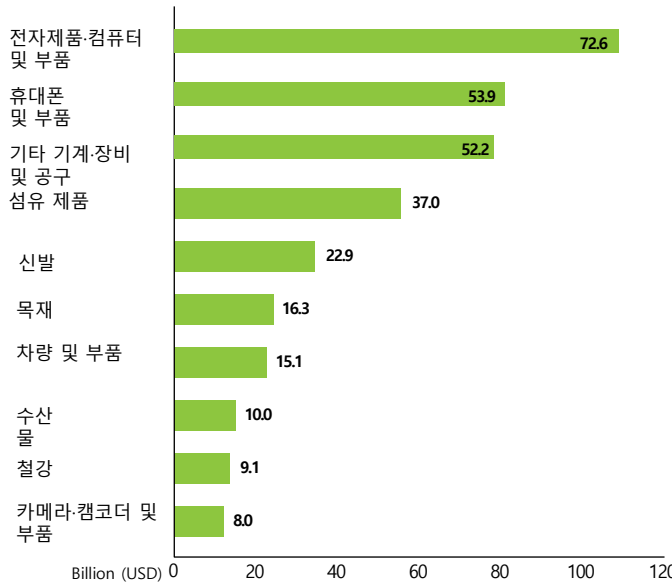
수출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하여 405.53억 USD에 달하였으며, 수입은 16.7% 증가하여 380.76억 USD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험과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2024년 총 수출액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Vietnam 상품 교역 현황

2024년 상품 수출 (B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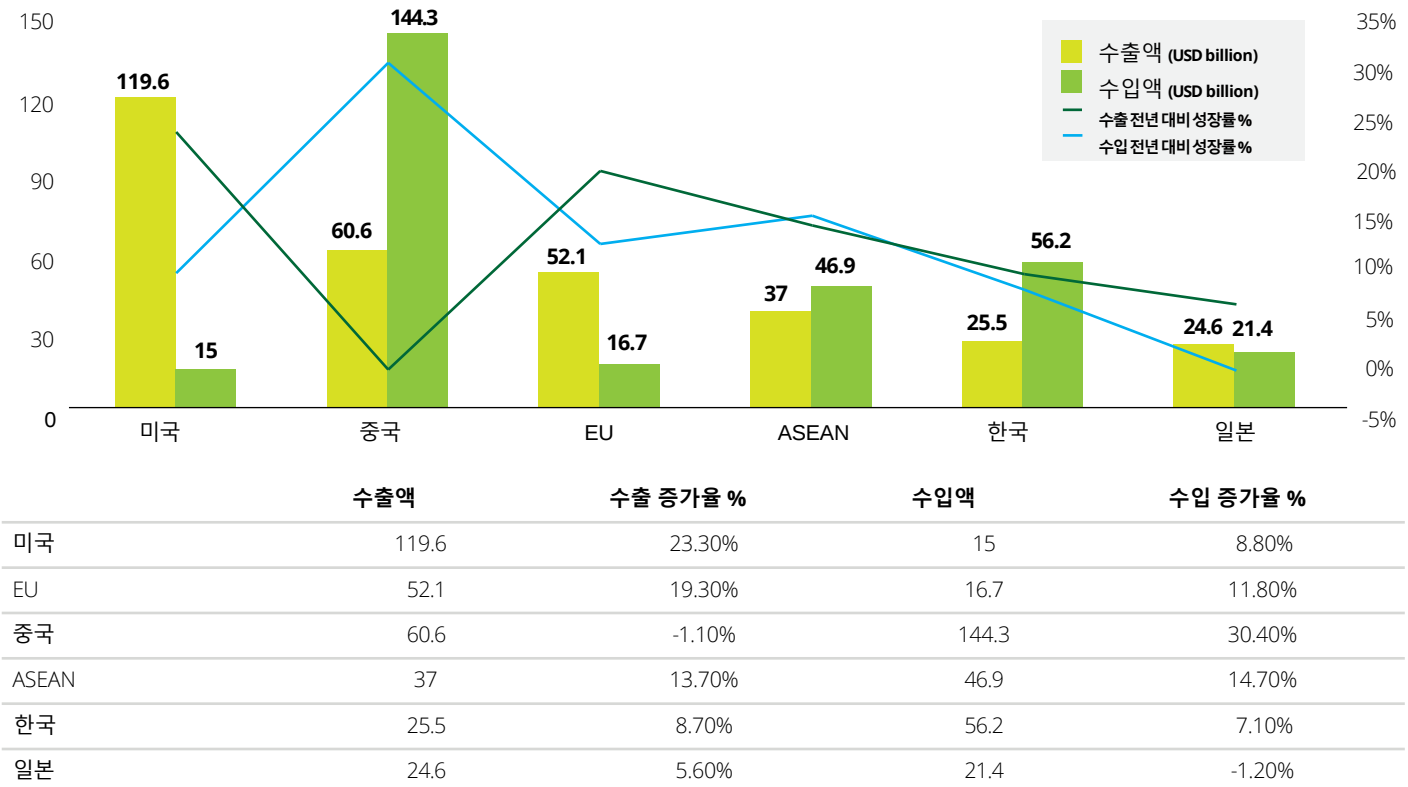
2024년 상품 수입 (Billion USD)



14. “베트남이 글로벌 사이버보안 순위에서 8계단 상승한 데 기여한 요인은 무엇인가요?” 과학기술부, 2024년 9월 26일.

2024년 베트남의 주요 교역 상대국

수출 증가분은 주로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자제품, 섬유 제품, 신발, 농산물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¹⁵



3.4. FDI 투자

베트남은 오랫동안 사업 확장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한 유리한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행정 개혁, 절차 간소화, 인프라 및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인력 개발과 더불어, 베트남은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센티브에는 세제 혜택, 토지 사용 지원, 우선 산업 및 지역 투자에 대한 특혜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베트남의 규제 환경은 글로벌 모범사례와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 세제 환경에서 가장 최근의 변화는 Global Minimum Tax (GMT, 최저한세) 도입으로, OECD Pillar Two 이니셔티브와 보조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베트남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지만, 동시에 다국적 기업(MNEs)이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던 기존의 세제 인센티브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선호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제 정책을 재검토하였습니다. 2024년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제182/2024/ND-CP호 시행령으로, 투자지원기금(Investment Support Fund)을 설립하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 기금은 세계적 수준의 하이테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치로서,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이미 활동 중이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과 반도체 외에도, 베트남은 제조·가공업, 부동산, 재생에너지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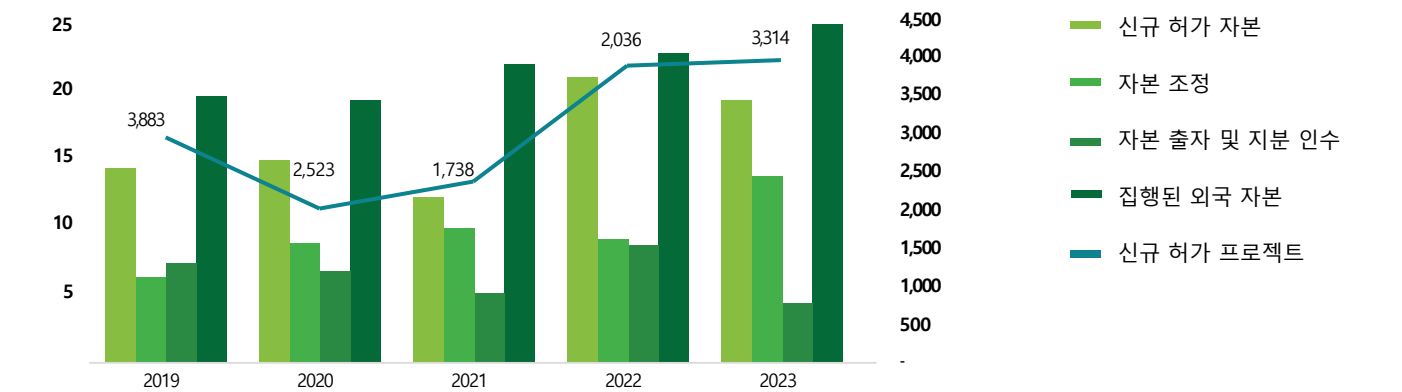
15. 베트남의 2024년 수출입 전망: 회복, 성장 및 새로운 이정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 자본 흐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2024년 유형별 FDI 자본 유입

2024년 집행된 FDI 자본은 약 253억 5천만 US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 자본 유입 (B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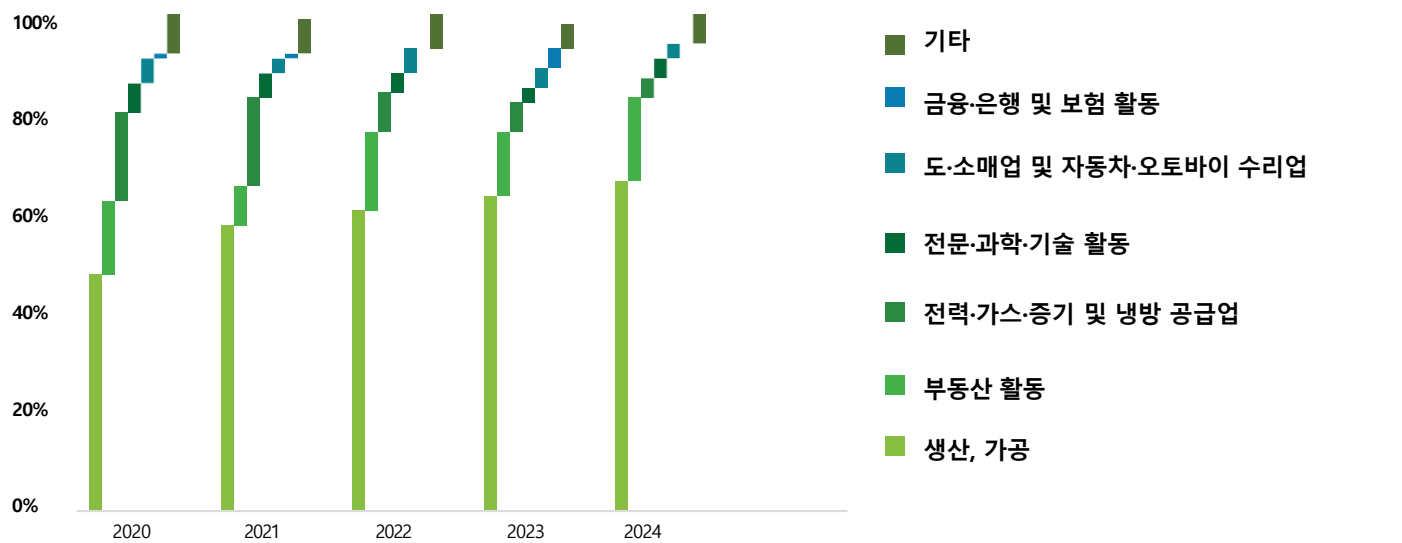


출처: MPI, Deloitte 분석

2020-2024년 산업별 등록 자본 비중(%)

베트남의 수출 지향적 경제는 제조업 부문으로의 강력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으로부터 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제조·가공업 부문은 최근 몇 년간 FDI 등록 자본이 꾸준하고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여 왔습니다. 2020년 48%에서 시작한 이 부문의 FDI 등록 자본은 2024년 67%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베트남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부동산 부문은 변동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FDI 유치에서 두 번째로 매력적인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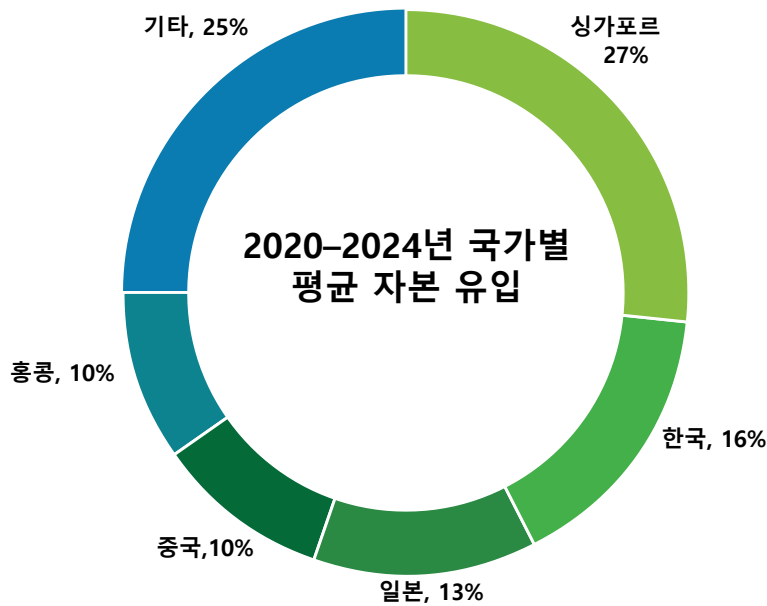
산업별 등록 자본 (%)



출처: MPI , Deloitte 분석

2020-2024년 국가별 평균 자본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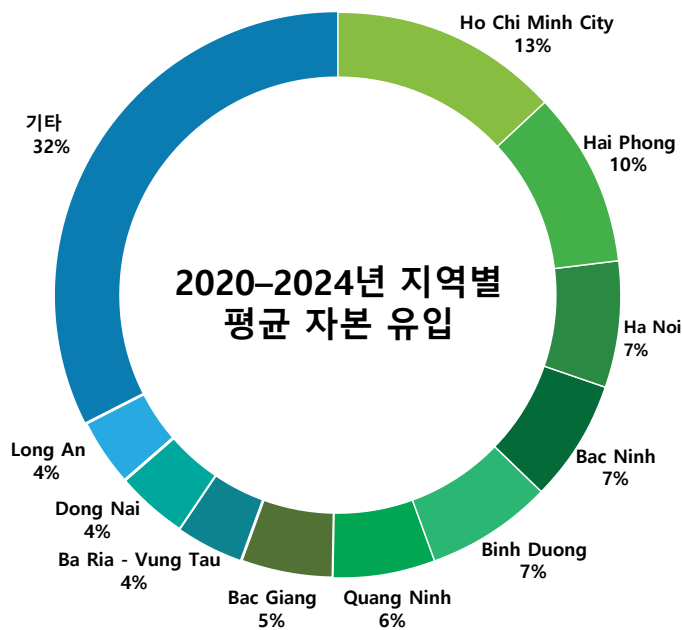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베트남의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 실적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어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국제 투자의 매력적인 신흥시장 주요 리스트에 꾸준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별 평균 자본 유입을 보면, 싱가포르가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한국(16%), 일본(13%)이 따르고 있습니다.



출처: MPI, Deloitte 분석

2020-2024년 지역별 평균 자본 유입*

호치민시는 13%로 FDI 유입을 압도하며 수년간 베트남의 최상위 투자 허브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이퐁이 10%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하노이·박닌·빈즈영은 각각 7%의 유입 비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처: MPI, Deloitte 분석

* 지방별 데이터는 행정 단위 통합 이전의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장: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



I. 베트남의 투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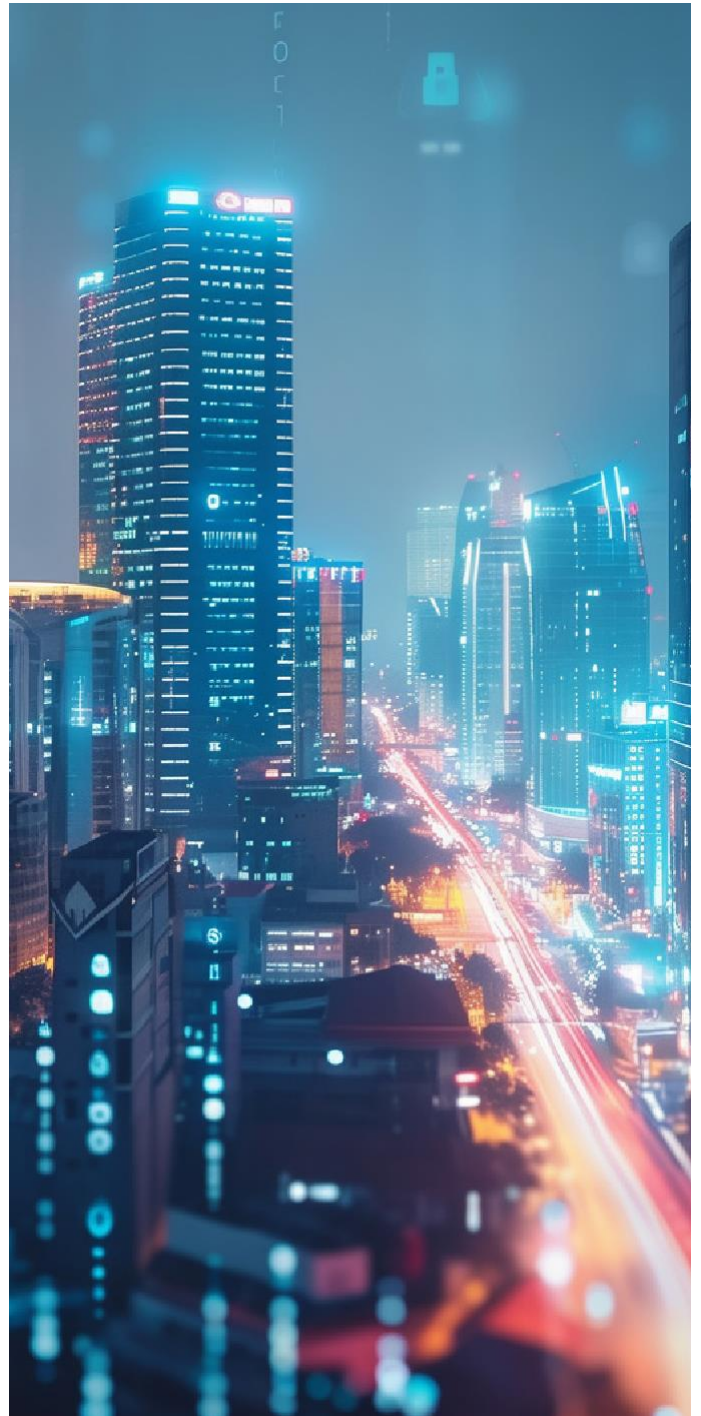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투자 (Direct investment)

1. 계약 형태에 의한 투자
2. 신규 법인 설립
3. 현지 또는 외국 투자자와 체결하는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 베트남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민관협력계약(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예: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Own-Operate (BOO), Build-Transfer-Lease (BTL), Build-Lease-Transfer (BLT), Operate-Manage (O&M) 계약 등)
4. 기존 법인의 지분 또는 자본 인수를 통한 투자

간접 투자 (Indirect investment)

1.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주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증권투자펀드를 통한 투자
3. 기타 중개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II.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의 선택은 투자자 수, 산업 분야, 프로젝트 규모, 향후 발전 계획(예: 증시 상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 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업 거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단일 또는 다수 회원); 주식회사합자회사 (파트너십); 지점(Branch);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업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의 당사자

법인 형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소유주 또는 회원의 출자금(자본금)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출자금은 회사의 자본(또는 정관자본)으로 간주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회원 수는 최대 50인으로 제한됩니다(2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적용). 유한책임회사의 회원은 자신이 출자하거나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의 재무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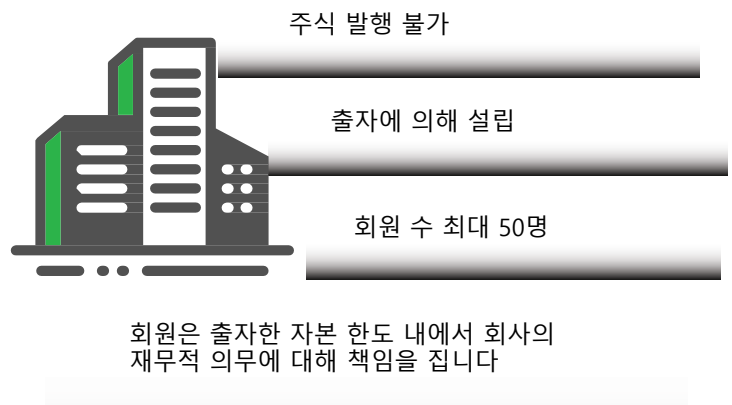
- i) 100% 외국인 투자자 소유 기업(모든 회원이 외국인 투자자인 경우)
- ii) 최소 1인의 베트남 투자자가 참여하는 합작 투자 기업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JSC)는 창립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이에 따라 정관자본을 형성하여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자본은 주식으로 분할되며, 각 창립주주는 자신이 인수 및 납입한 주식 수에 상응하는 지분을 보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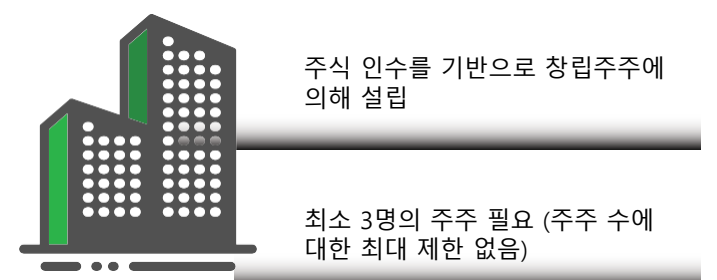
주식회사는 최소 3명의 주주가 필요하며, 최대 주주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i) 100% 외국인 투자자 소유 기업
- ii)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작 투자 기업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합자회사 (Partnership)는 두 명의 개인 무한책임사원 (managing partners) 간에 설립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모든 채무와 의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한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외에 유한책임사원 (contributing partners)을 둘 수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합자회사의 재무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 (PARTNERSHIP)



무한책임사원 (Managing partners)은 합자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 (Contributing partners)은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합자회사의 재무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BCC)은 특정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 간에 체결됩니다.

BCC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실행되며, 대신 계약 당사자들은 BCC의 이행 및 감독을 위해 운영위원회 (co-ordination board)를 구성합니다. BCC 투자자들은 각자의 책임 배분 및 BCC에서 발생하는 손익 분배에 대해 상호 합의합니다. BCC 당사자들은 BCC의 재무적 의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외국인 투자자와 베트남 투자자 간에 체결되며,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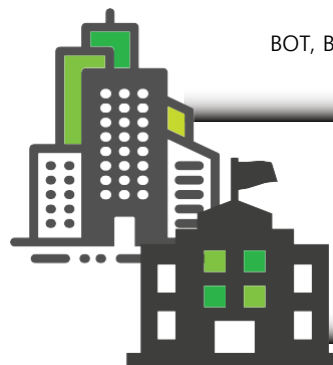
BCC 당사자는 BCC의 재무적 의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합니다.

민관협력계약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계약은 관련 정부 당국과 프로젝트 회사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특정 인프라 사업 및 공공서비스(예: 교통 시스템, 상수도 시스템, 발전소, 교육 및 보건 관련 인프라)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되는 투자 형태입니다.

PPP 계약에는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Own-Operate (BOO), Build-Transfer-Lease (BTL), Build-Lease-Transfer (BLT), Operate-Manage (O&M) 계약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 유관기관과 PPP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PPP 계약은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민관협력계약 (PUBLIC-PRIVATE PARTNERSHIP)



BOT, BTO, BOO, BTL, BLT, O&M 계약을 포함

관련 정부 당국과 프로젝트 회사 간 계약을 기반으로 특정 인프라 사업 및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 국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업종에 따라 상이한 지분 보유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M&A에 대한 법적 체계는 기업법 (Law on Enterprise), 투자법 (Law on Investment) 및 관련 시행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활동의 요건, 절차 및 세무상 결과를 포괄합니다. 또한 경쟁법 (Competition Law) 역시 M&A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인수합병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30%~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법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정대리인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인수합병 실행 전에 경쟁 관리 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사업 주재 형태 (Other presence)

지점 (Branch) 설립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며, 일부 업종(예: 은행, 외국 로펌)에만 허용됩니다. 지점은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며,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와 달리 베트남 내에서 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점 (BRANCH)



소수 업종에서만 허용

독립적인 법인이 아님

베트남에 사업 관계나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한 외국 기업은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제한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사무소 역할 수행
- 시장 조사 수행
- 본사의 사업 및 투자 기회 홍보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대표사무소는 제한된 활동만 수행할 수 있으며,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고, 시장조사를 수행하며, 본사의 사업 및 투자기회를 홍보합니다.

III. 베트남 내 상업적 주재 설립을 위한 주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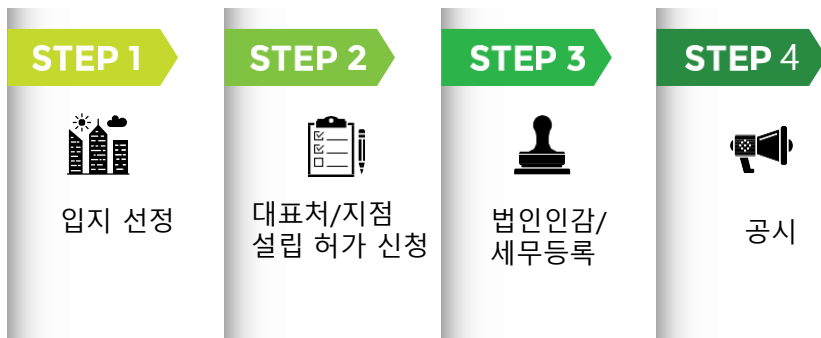
회사 설립 절차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관련 허가 기관에 투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투자법」과 「기업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현재 다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i: 투자허가서(IRC) 취득
- ii: 사업자 등록증명서(ERC)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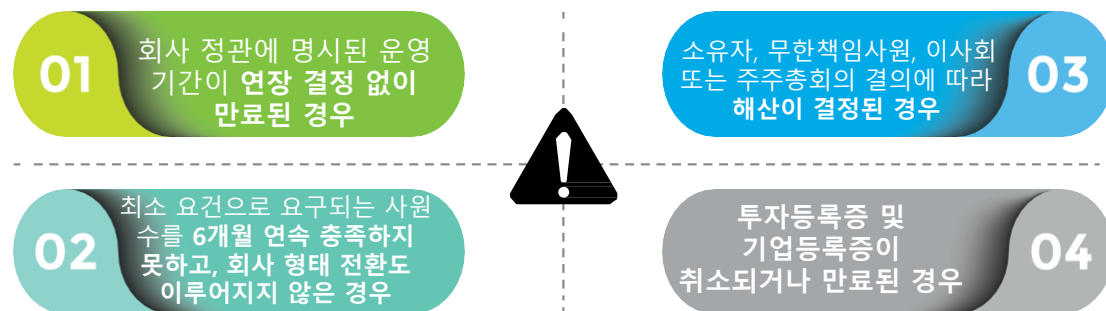


지점 및 대표 사무실 설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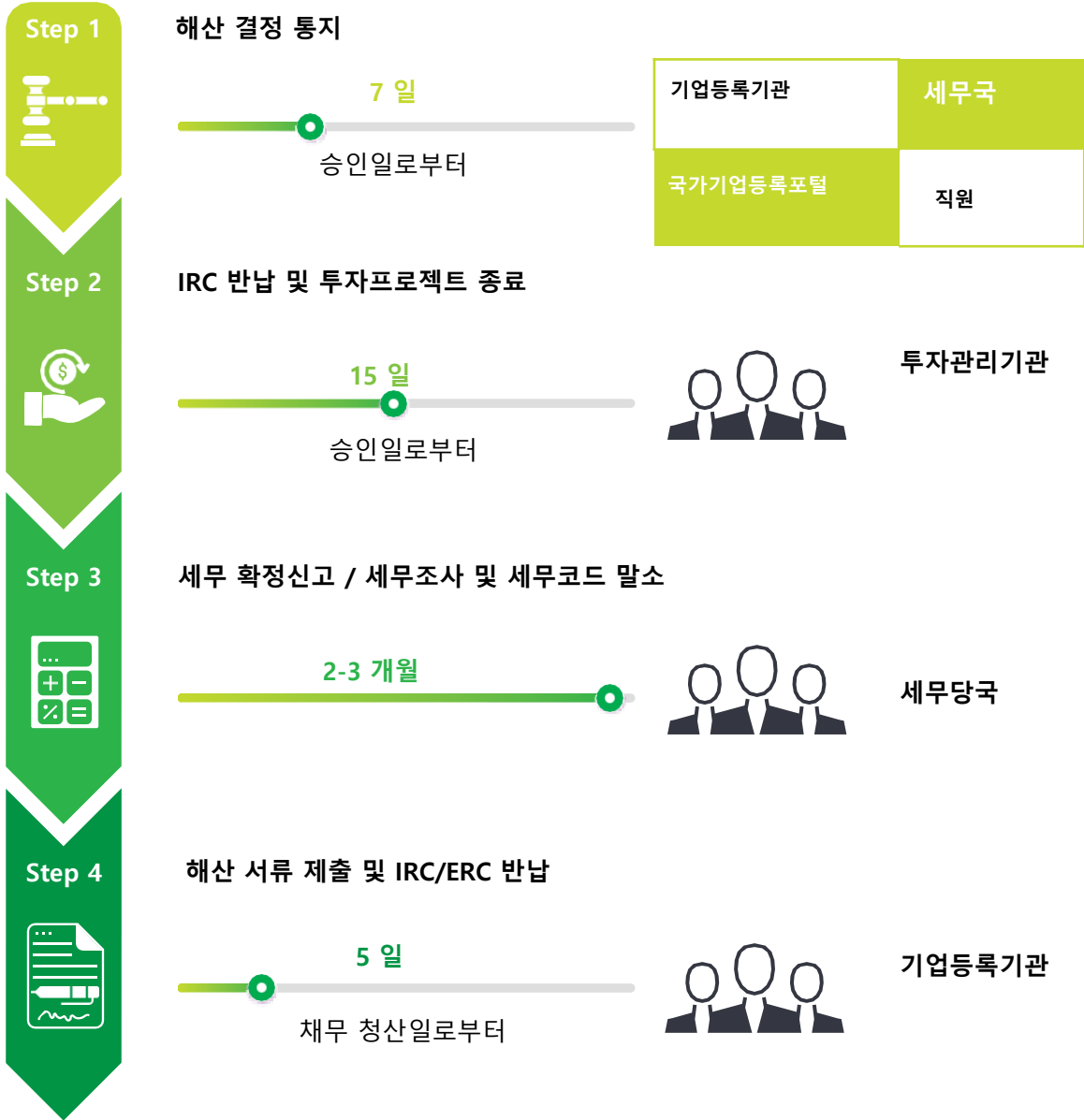
청산 및 사업 종료

기업의 해산·청산·폐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우선순위를 부여한 프로젝트의 설립 절차 일정은 단축됩니다.

회사는 모든 채무와 부채가 정리되고,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진행 중인 분쟁에 관여하지 않을 때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는 통상적으로 최종 세무조사를 포함하여 약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제3장: 회계 및 감사 요건





회계 체계

베트남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베트남 회계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거래는 베트남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해야 합니다. 은행업, 보험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베트남 회계제도는 장부기장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으로,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서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표준 계정과목표, 규정된 재무제표 서식, 회계장부 및 문서 서식, 기업 거래에 대한 상세한 복식부기 처리, 사용 언어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26개의 회계기준이 있으며, 이는 제정 당시의 국제회계기준(IAS) 구버전을 주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AS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았고, 금융상품 및 자산손상과 같은 핵심 회계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회계 체계는 일반적으로 원칙(principle)보다는 규칙(rule)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장부 기재의 세부사항과 다양한 증빙서류에 대한 행정적 업무를 세심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및 문서는 종이 형태 또는 전자 형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출력하여 적절히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및 문서의 보관 기간은 그 종류에 따라 5년, 10년 또는 무기한입니다.

법정 보고

베트남 회계제도는 다음과 같은 규정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을 요구합니다.

- 대차대조
- 표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재무제표 주석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는 법정대표자와 최고회계책임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공익기업의 연간 재무제표는 반드시 베트남의 독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간 재무제표(감사 대상 포함)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상장기업 등 특정한 경우에는 중간 재무제표도 요구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재무부(MoF)는 IFRS 적용 방안을 승인하는 제345/QD-BTC호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3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IFRS 준비 (2020-2021년)
- 2단계: IFRS 시범 적용 (2022-2025년)
- 3단계: IFRS 의무 적용 (2025년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대상에 한함)

현재 IFRS 적용은 베트남에서 의무가 아닙니다. 제345호 결정은 2025년 이후 일정 대규모 기업에 대해 IFRS 적용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IFRS 도입은 각 기업의 역량과 전략적 고려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IFRS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된 베트남 재무보고기준(VFRS) 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재무부는 IFRS 적용과 관련한 시행규칙(안)을 공표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량이 있는 기업은 IFRS 또는 VAS 중 선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
-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현행 기준을 전면 준수해야 하며, 자체 회계제도를 구축해야 함
-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VAS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되며, IFRS 재무제표가 공식 법정 보고서로 인정됨

본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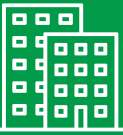


제4장: 세무 및 관세



I. 조세 제도

베트남에서의 대부분의 사업 활동이나 투자는 베트남 조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세금은 국가 차원에서 부과되며,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업

- 법인소득세 (CIT)
- 부가가치세 (VAT)
- 외국계약자세 (FCWT)
- 기타 세목(특별소비세, 자원세, 재산세, 관세 등)



개인

- 개인소득세 (PIT)
- 사회보험,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기여금
- 부가가치세 (VAT)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경우)

#		월간	분기별	확정
		다음 달 20일	다음 분기 첫 달의 마지막 날	역년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째 달의 마지막 날
1	법인소득세	해당 없음	잠정 납부	(회계연도)
2	개인소득세(*)	✓	✓	(역년)
3	부가가치세 (**)	✓	✓	해당 없음
4	외국계약자세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월별로 FCWT 신고를 등록한 경우에는 지급월의 다음 달 20일		
5	사회보험,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해당 월의 마지막 날		
6	수출/ 수입 관세	발생 시		

(*) **개인소득세(PIT)**는 월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분기별 부가가치세(VAT) 신고 자격이 있는 경우, PIT를 분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설립된 회사는 설립 연도에는 분기별로 VAT를 신고해야 하며, 이후 1개 회계연도(12개월) 전체를 운영한 다음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요건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즉, 직전연도 연간 매출이 500억 VND 이하인 경우 분기별 VAT 신고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월별 VAT 신고가 적용됩니다. 분기별 VAT 신고 자격이 있는 회사는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소득세 (CIT)

세율 및 세제 인센티브

기업은 법인세법(CIT Law)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표준 법인세율은 20%입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프로젝트의 위치 및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25%에서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 광물 자원의 탐사·탐광·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은 프로젝트의 위치에 따라 40% 또는 5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제 인센티브는 규정된 장려 업종, 장려 지역,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신규 투자 프로젝트와 일부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부여됩니다. 다만, 인수합병(M&A)이나 조직 재편의 결과로 설립된 프로젝트는 신규 투자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이전:

-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장려 업종은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규정되며, 여기에는 교육, 보건, 체육·문화, 하이테크, 환경보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인프라 개발, 농수산물 가공, 소프트웨어 생산, 재생에너지가 포함됩니다.
- 세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장려 지역은 일정 경제구역, 하이테크 구역, 일부 산업단지 및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 포함됩니다.
- 개발 우선 산업 제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신규 투자 또는 확장 프로젝트는 다음의 경우 CIT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또는
 - 섬유 제품, 신발, 전자 부품, 자동차 조립, 기계 산업을 지원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사업 규모 요건: 대규모 제조 프로젝트(특별소비세 대상 제품 제조 또는 광물자원 채굴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IT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총 자본금이 VND 6,000 billion 이상이고, 인허가 후 3년 이내에 집행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늦어도 매출 발생 4년 차까지 연간 매출 1조 VND 이상 달성, 또는
- 늦어도 운영 4년 차까지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고용.
- 총 자본금이 1조2,000억 VND 이상이고, 인허가 후 5년 이내에 집행되며, 「하이테크법」 및 「과학기술법」에 따른 기술평가를 받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베트남에서의 법인세(CIT) 인센티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우대 세율:** 표준 법인세율(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대 세율은 최초 매출 발생 연도부터 적용되며, 하이테크 기업 또는 프로젝트는 예외입니다.
- 세금 면제:** 일정 기간 또는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제 기간은 최초 이익 발생 연도 또는(해당되는 경우) 매출 발생 4년 차부터 적용되며, 하이테크 기업은 예외입니다.

지역별 인센티브

활동	CIT 인센티브	
	우대 세율	세금 면제
-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 경제구역 - 하이테크 구역(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된 집적 정보기술 단지 포함)	15년간 10%	4년간 세금 면제, 및 - 이후 9년간 50% 감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10년간 17%	2년간 세금 면제; 및 - 이후 4년간 50% 감면
산업단지(사회·경제적으로 우대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산업단지)	해당 없음	2년간 세금 면제; 및 - 이후 4년간 50% 감면

산업별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는 정부의 개발 정책에 따라 투자 우선 산업으로 지정된 분야에 적용됩니다.

활동	CIT 인센티브	
	우대 세율	세금 면제
- 하이테크 기업(과학기술 기업 포함) - 하이테크 프로젝트의 연구, 응용 및 인큐베이팅 - 환경보호 - 인프라 개발 투자(수도, 전력, 도로, 항만 등) - 소프트웨어 생산 - 부품소재산업(자원 산업)	15년간 10%	4년간 세금 면제, 및 - 이후 9년간 50% 감면
사회화 프로젝트(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또는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우)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10% 적용	4년간 세금 면제, 및 - 이후 9년간 50% 감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또는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사회화 프로젝트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10% 적용	4년간 세금 면제, 및 - 이후 5년간 50% 감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의 농업·축산·농수산물 가공;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의 임업; 종자 및 가축 품종 생산; 소금 생산; 농산물·수산물·식품의 보존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10% 적용	위치 기준 세금 면제 및 감면 인센티브(해당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농업·축산·농수산물 가공	프로젝트 전 기간 동안 15% 적용	
철강 제조; 에너지 절약 제품 생산; 농업·임업·수산업·염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 제조; 전통 공예품 생산 등	10년간 17%	

사업 규모별 인센티브

활동	CIT 인센티브	
	우대 세율	세금 면제
- 하이테크 기업(과학기술 기업 포함)자본금 VND 6,000 billion 규모 프로젝트 (1) - 자본금 VND 12,000 billion 규모 프로젝트 (2)	15년간 우대세율 10% 적용	4년간 세금 면제, 및 - 이후 9년간 50% 감면

특별 투자 인센티브

중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혁신센터 및 연구개발(R&D) 센터: 최소 VND 3,000 billion 의 투자 자본금과 3년 내 최소 1,000억 VND 집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히 장려되는 업종에 속하는 프로젝트: 최소 VND 30,000 billion 의 투자 자본금과 3년 내 최소 1조 VND 집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도는 총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5년~22.5년간 5%~10%의 우대 세율 적용, 추가로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나 투자 프로젝트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4년~6년간 법인세 면제
- 9년~13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2025년 10월 1일 부터

새로운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5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인세법은 중소기업(SME)에 대한 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간 총수입금액이 30억 VND 이하인 기업에는 15%의 법인세율
- 연간 총수입금액이 30억 VND 초과 500억 VND 이하인 기업에는 17%의 법인세율

적용 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직전 법인세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정부가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은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 납세자가 자회사 또는 특수관계회사로서 특수관계자가 우대 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사례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세법은 또한 우대되는 사업 활동 및 지역에 대한 보완 및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대 사업 활동의 보완 및 개정		
번호.	보완된 사업 분야	적용 가능한 CIT 인센티브
1	법령에 따라 규정된 전략기술의 적용.	✓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세액의 50% 감면
2	사이버보안 제품 제조 및 사이버보안 서비스 제공,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제조 및 핵심 디지털 기술 서비스 제공, 「디지털산업법」에 따른 전자 장비 제조, 반도체 칩 제품의 연구개발·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개발	✓ 최소 6,000억 VND의 투자 자본금과 특별히 장려할 만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15년간 10%의 우대 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법령에 따른 핵심 화학 산업 제품 및 핵심 기계공업 제품의 제조	
4	섬유제품 및 의류, 가죽 및 신발, 전자 및 정보기술(반도체 설계 및 제조 포함),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계공업 분야의 지원 산업 제품	✓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세액의 50% 감면
5	「과학기술 및 혁신법」에 따른 과학기술기업.	✓ 10년간 17%의 우대 세율 적용
6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타 디지털 기술 제품의 생산	✓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세액의 50% 감면
7	「중소기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SME) 지원 기술 인프라 투자 및 운영, 중소기업 창업 보육센터,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공동 업무공간(Co-working space)	✓ 10년간 17%의 우대 세율 적용

우대 법인세 인센티브 적용지역에 대한 조건 보완 및 개정

번호	보완·개정된 우대 적용지역	적용 가능한 법인세 인센티브
1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경제구역	✓4년간 세금 면제, 및 이후 9년간 50% 감면 ✓15년간 우대세율 10% 적용
2	총리의 결정에 의해 설립된 디지털 기술 집적구역.	
3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경제구역	✓2년간 세금 면제,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10년간 우대세율 17% 적용
4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산업단지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인센티브 적용 불가

납부세액 계산

CIT 납부세액 = 세율 × 과세소득



연간 CIT 확정신고는 베트남 내 모든 기업에 요구됩니다. 분기별 CIT 확정 신고는 요구되지 않으나, 과세연도 최초 3분기 동안의 잠정 CIT 납부액은 해당 연도의 최종 CIT 부담액의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CIT 확정신고에는 회계상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항목이 포함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무 규정상 손금불산입 비용, 면세소득 등 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간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2025년10월1일 부터

- 신규 법인세법은 특정 소득에 대한 면세를 규정합니다:
- 특별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임산물, 작물재배, 축산, 농수산물 가공을 위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가공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
 -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디지털 전환 계약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소득,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신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판매 소득, 시험생산 제품(통제된 시험생산 기간 포함) 판매 소득에 대해 3년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됨
 - 과학 연구, 기술 개발, 혁신, 디지털 전환 관련 활동을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국내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 국가로부터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탄소배출권 최초 양도 소득, 녹색채권 이자 및 녹색채권 최초 양도 소득
 - 국가예산 및 정부의 투자지원기금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

신규 법인세법은 소득공제 방식에도 변화를 규정합니다:

과세기간 중 해외에서 사업·생산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베트남 기업은 해외에서 납부한 CIT를 베트남에서 납부할 CIT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액은 베트남 CIT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규정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베트남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에 대한 소득포괄규칙(Income Inclusion Rule - IIR)에 따라 추가 CIT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추가 CIT 역시 CIT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납부할 CIT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금산입 비용

법인세 목적상 비용이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10px 0 0;"> <div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em;">1</div> <p>실제로 발생하였고 회사의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음</p> </div> |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10px 0 0;"> <div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em;">2</div> <p>VND 20 million 초과 지출은 은행을 통한 지급으로 인정되거나 은행 지급증빙으로 지원되어야 함
 <small>* 2025년 10월 1일부터는 해당 기준금액이 500만 VND으로 하향 조정됩니다.</small></p> </div> |
|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10px 0 0;"> <div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em;">3</div> <p>적법한 증빙서류로 입증됨</p> </div> |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1; padding: 10px; border-radius: 10px 10px 0 0;"> <div style="background-color: #00bcd4; color: white;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2em;">4</div> <p>손금불산입 비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p> </div> |

손금불산입 비용

아래는 주요 손금불산입 비용 유형입니다:

- 관련 법규에 부합하지 않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i)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 (ii) 적법한 증빙이 없는 경우, (iii) 규정된 감가상각률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정부가 규정한 합리적 소비 수준을 초과하는 원재료, 소모품, 연료, 전력 및 상품 비용
- 개인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였으나 충분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단체협약·회사 재무정책에 명확한 조건 및 금액으로 규정되지 않은 인건비
- 직원 복리후생비가 월 평균 임금 1개월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종업원에 대한 임의 퇴직연금 기금 기여금, 임의 퇴직연금보험 및 생명보험료가 1인당 월 300만 VND을 초과하는 경우
- 비경제조직·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의 이자율이 중앙은행(SBV) 공시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 등록된 출자 일정에 따라 아직 납입하지 않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
-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EBITDA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초과분은 이후 5개 연속 과세연도 내 이월 가능)
- 금융투자 손실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 제품보증충당금, 건설공사·직업위험 충당금 등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되지 않았거나 전액 지급되지 않은 발생 비용
- 매입채무 외 외화항목의 연말 환산에서 발생한 미실현 외환손실
-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PE)에 배분한 사업관리비가 매출액 기준 배분비율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 보건, 자연재해, 자선주택 건립 등을 제외한 후원비용
- 행정벌, 과태료, 자연이자
- 험업, 복권업, 증권거래업 등은 재무부에서 발행한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기업은 법에 규정된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연구개발(R&D) 기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세전 이익의 최대 10%까지 인정됩니다.

2025년 10월 1일 부터

신규 법인세법은 손금산입 비용 및 손금불산입 비용에 중대한 변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중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된 비용(실제 발생 비용의 일정 비율로 산정)
- 문화 활동을 위한 기부금, 재해 및 전염병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기부금,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한 정부 또는 총리 지시에 따른 기여금, 과학연구·기술개발·혁신·디지털 전환을 위한 후원금
- 과학연구·기술개발·혁신·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
- 동일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특정 사업 관련 비용(정부 지침에 따름)
- 기업의 사업 목적에도 활용되는 공공시설 건설 지원 비용
- 탄소중립 및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된 비용(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 총리의 결정 및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특정 기금에 대한 기여금
- 규정에 따른 적격 세금계산서 및 비현금 지급 증빙으로 뒷받침되는 비용(단, 정부가 규정한 특정 사례는 예외).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부가가치세법 제48/2024/QH15호와 일치합니다.
- 기업의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상품 및 용역의 매입에 대해 공제 불가 및 환급 불가한 매입 VAT
- 이미 투자 가치에 자본화된 투자 단계의 차입이자 비용, 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 중 민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 관련 업종별 규정에서 정한 지출 요건이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용(손금불산입 비용에 해당)

신규 법인세법은 또한 R&D 활동에 대해 보다 우대적인 규정을 부여합니다:

최대 적립 한도를 과세소득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기금으로 인해 환수되는 CIT에 대한 이자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환수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발행된 5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5년물 국채가 없는 경우 10년물 국채)이며, 이자 계산 기간은 2년입니다. 합병, 통합, 분할, 소유권 또는 사업 형태 전환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후 신설된 법인 또는 합병·통합·분할·전환 후 존속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구조조정 이전 기업의 과학기술개발기금을 승계하여 관리·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 결손금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 이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은 면세기간 중에도 전액 연속적으로 이월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 우대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비우대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 참여 권리(광물 탐사·채굴 프로젝트는 제외) 양도로 인한 손실은 다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25년10월1일 부터

신규 법인세법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부동산 양도, 투자 프로젝트 양도 및 투자 프로젝트 참여 권리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법인세 인센티브를 현재 적용받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

이전 규정 하에서는, 기업은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손실을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는 것만 허용되었으며, 그 반대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법인세법 하의 이러한 변화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현실 및 국제적 관행과 더 잘 일치하며,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특히 다수의 산업 및 사업 부문에서 점점 더 활동하고 있는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경제 부문의 잠재력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익 송금

외국인 투자자는 누적 결손금이 없는 경우, 매 회계연도 말 또는 베트남 내 투자가 종료될 때 연간 이익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예정된 송금일 최소 7영업일 전에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 양도에 대한 과세

베트남 회사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은 20%의 CIT가 부과됩니다.

$$\text{CIT} = 20\% \times (\text{매출액} - \text{원가} - \text{양도비용})$$

(*) 비용은 최초 양도의 경우 출자자본금 또는 출자자본금의 최초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 세무 당국은 가격이 정상거래 수준(arms length market level)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 목적상 양도 가격을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법인의 직접 양도뿐만 아니라 간접 양도(예: 베트남 회사를 보유한 해외 모회사의 양도)에도 과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외국 법인에 의한 유가증권(채권, 공개 주식회사 주식 등)의 양도는 총 매출액의 0.1%를 기준으로 한 간주 방식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10월1일 부터

신규 법인세법은 현행 이익 기반 과세를 대체하여 총 매출액에 근거한 고정세율 과세를 도입합니다.이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양도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정해진 세율로 납부해야 함을 의미하며,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세무 의무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2020년 11월 5일, 베트남 정부는 개정된 이전가격(TP) 규정(제132/2020/ND-CP호 시행령, 이하 “시행령 132”)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2020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17년에 발행된 제20/2017/ND-CP호 시행령을 대체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시행령 132가 정상거래 범위를 베트남 기준으로 재정의하여, 기존의 제25백분위(즉, 하위 사분위)에서 제35백분위로 변경하고, 상위는 제75백분위까지로 규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시행령 132는 국가별보고서(CbC Report)에 관한 통지 및 현지 제출 의무를 제18조 제5항에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로, 2025년 1월 3일 베트남은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간 권한당국협정(MCAA CbCR)에 서명하였습니다. 다만, 현지점에서 베트남은 해당 약속을 이행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약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OECD의 최신 발표 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내부 서비스(예: 경영자문,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 등)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도 세무조사나 특정 TP 점검 시 보다 엄격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132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납세자는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 **이익 테스트(Benefit test):** 현지 서비스 수취인이 해당 서비스로부터 경제적·재무적·상업적 편익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를 평가
- b. **역량 테스트(Capability test):**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자원, 자산, 경험, 무형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
- c. **정상거래 테스트(Arm's length test):** 이전가격 정책이 정상거래 원칙을 충족하고 다국적 기업 집단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평가

또한, 시행령 132가 TP 준수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제45/2021/TT-BTC호 시행규칙(“시행규칙 45”)은 세무 당국과의 단일·이중·다자간 사전가격합의(APA) 적용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45의 가장 큰 변화는,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2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제132/2020/ND-CP호 시행령(“시행령 132”)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0/2025/ND-CP호 시행령(“시행령 20”)을 발행하였으며, 이는 2024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시행령 20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 관계 유형과 관련하여 (제5조 제2항):

- 보증 또는 대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자 간에 출자, 경영, 지배 관계가 없는 한, 신용기관과 체결된 거래는 더 이상 특수관계자 거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독립적인 (회계상) 지점 또한 이전가격 공시 요건의 대상에 포함되며, 이전가격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신용기관과 그 지배주주, 계열사, 자회사 간의 관계를 「신용기관법」에서 정의한 동일한 개념에 따라 이전가격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 손금산입 가능한 순이자 비용과 관련하여:

- 시행령 132는 손금산입 가능한 순이자 비용 한도를 납세자의 EBITDA의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이자도 포함됩니다.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자 비용은 연속 5개 과세연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시행령 20은 2023 과세연도까지 신용기관으로부터만 발생한 손금불산입 이자 비용의 이월 규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납세자가 2024년에 더 이상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되지 않은 손금불산입 이자 비용은 시행령 132에 규정된 잔여 연도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납세자가 2024년에도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이월 규정은 시행령 13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용됩니다.

• 베트남 중앙은행(SBV)의 협력 역할과 관련하여:세무 당국의 요청 시 정보 제공을 조율하는 SBV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쟁 및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전가격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년간 연속적으로 저수익을 기록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동일 업종 내 다른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영 성과를 보이는 경우
- 이익률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 상당한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보유한 경우
- 로열티, 그룹 내 서비스, 금융거래 등 복잡한 거래로 인한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2. 베트남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실행계획

베트남은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협약” 또는 “MLI”）」에 서명하였습니다. 협약은 다음과 같이 발효됩니다: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적립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베트남이 부과하는 기타 모든 세목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최대 75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DTA 변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베트남 내 투자 및 거래 구조화 계획에 미칠 영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최대 75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DTA 변경 가능성과 이로 인한 베트남 내 투자 및 거래 구조화 계획에 미칠 영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베트남 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2023년 11월 29일, 제15기 국회는 글로벌 최저한세(GMT)에 대한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E Rules)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적용하는 제107/2023/QH15호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여기에는 국내 최저한세(QDMMT) 및 소득포괄규칙(IIR)이 포함됩니다.

동 결의는 베트남이 (i) QDMMT 규칙과 (ii) IIR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칙 모두 Pillar 2 글로벌 시행 맥락에서 베트남의 세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DMMT 규칙은 본질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IIR은 베트남의 해외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QDMTT 및 IIR 규칙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과 함께 결의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QDMT 규칙	IIR 규칙
 적용 범위	베트남 내 구성기업체: • 해 외 에 모 회 사 가 위 치 한 다 국 적 기업(MNE)의 경우 (인바운드 투자) • 베트남 다국적 기업(MNE)의 경우	베트남 내 모기업 (Parent Entities): 다국적 기업(MNE)이 베트남 외부의 구성기업체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베트남 내 모기업(최종 모기업, 중간 모기업 및 부분 소유 모기업 포함) (아웃바운드 투자)
 산정 공식	$\text{Top-up} = (\text{Top-up 세율} \times \text{초과이익}) + \text{추가 현행 Top-up Tax(있는 경우)}$ 그중에: - $\text{Top-up Tax} = 15\% (-) \text{ ETR}$ - $\text{실효세율} - \text{Effective Tax Rate (ETR)} = \text{해당 관할지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체의 조정된 부담세액의 합계} \div \text{해당 관할지역의 회계연도 순 GloBE 소득}$ - $\text{Excess profit} = \text{Net GloBE Income} (-) \text{ 실체기반 소득 제외액}$ - $\text{Net GloBE Income} = \text{GloBE Income} (-) \text{ 모든 구성기업체의 GloBE 손실}$ - 실체기반 소득 제외액 (<i>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i>)= 모든 구성기업체의 적격 유형자산 장부가액 합계의 5% + 적격 인건비 합계의 5% (2024년부터 2032년까지의 과도기적 카브아웃 기간 종료 이후 적용)	$\text{Top-up} = (\text{Top-up 세율} \times \text{초과이익}) + \text{추가 현행 Top-up Tax(있는 경우)} - \text{QDMTT.}$
 Top-up Tax 소득 및 Top-up Tax 배분	• 구성기업체의 모든 소득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QDMTT 적용 대상이 됩니다. • QDMTT 하에서 Top-up Tax의 배분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 Top-up Tax 납부세액은 모기업의 구성기업체에 대한 지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이후 Top-up Tax는 GloBE 소득 비율에 기초하여 각 구성기업체에 배분됩니다.
 신고의무	QDMTT 및 IIR 납세자는 다음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GloBE 정보 신고서 (GloBE Information Return) •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인한 차이에 대한 설명자료와 함께 보충 GMT 신고서 • 신고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납세자: 베트남 내 구성기업체. 그룹에 1개 이상의 구성기업체가 있는 경우, 최종 모기업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구성기업체를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최초 연도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 이후 연도는 15개월 이내 • 납세자: 베트남 내 모기업

3. 개인소득세(PIT)

개요

납세자 구분	세무상 거주자	세무상 비거주자
과세소득	전 세계 소득	베트남 원천 소득
근로소득 세율	누진세율 (5~35%)	단일세율 (20%)
세금 계산	세금 계산 소득 = 과세소득-공제항목	세금 계산 소득 = 과세소득
공제 항목	- 기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의무적 및 상한이 있는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액 - 자선·인도적 기부금	공제 불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청	요청하지 않음
세액 공제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조세조약상 면제 적용 가능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cy)

개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최초 입국일부터 연속된 12개월 또는 1 과세연도 내에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임시·영주 거주 카드에 의해 기록된 베트남 내 등록된 영구 거주지를 보유한 경우
- 과세연도 내 183일 이상의 기간으로 베트남 내 숙소(예: 임대한 주택·호텔 등)를 보유한 경우



참고: 등록 주소지 또는 임차 주택을 183일 이상 보유하였으나 베트남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183일 미만인 개인도 다른 국가의 거주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의 지급·발생·청구 장소와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PIT)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 세계 근로소득은 소득 수준에 따라 5%에서 3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베트남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단일세율 20%로 과세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비거주자의 경우 베트남 원천소득 포함)에 대해서도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소득 유형별로 서로 다른 단일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연도 (Tax Year)

베트남의 표준 개인소득세(PIT) 신고 기간은 달력 연도(1월~12월) 기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첫 번째 세무연도는 베트남 첫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연속 기간을 적용합니다(해당 연도 내 183일 미만 거주 시). 둘째 연도부터는 세무연도는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에는 급여, 임금 및 현금·현물 형태의 모든 보수와 복리후생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최초로 베트남에 근무차 입국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일시적 이주 수당,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귀국 근무 수당
- 회사 정책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
- 회사 정책에 따른 결혼·장례 위로금(1개월 평균급여 한도)
- 현물로 지급되는 연 1회 본국 왕복 항공권
- 자녀 유치원~고등학교 학비(현물 지급)
- 건강·사망 관련 비적립성 임의 보험료
- 수혜자가 특정되지 않은 회원권·건강관리·오락비(현물)
- 직원 및 직계가족의 중병 치료 지원금
- 일당/출장비: 회사 정책에 따라 지급 시 전액 비과세
- 주택수당: 총 과세소득의 15% 초과분만 과세
- 제복 수당: 현금 연간 VND 5 million 이하 또는 현물
- 초과근무수당: 정상 근무수당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

비근로소득 (Non-Employment Income)

비근로소득은 고정세율로 과세되며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연간 VND 100 million 초과 임대소득 포함)
- 자본투자소득(이자, 배당 등)
- 자본양도소득(증권 양도 등)
- 부동산 양도소득
- 상금·선물: VND 10 million 초과분(카지노 상금 제외)
- 가맹권, 저작권, 로열티: VND 10 million 초과분
- 상속: VND 10 million 초과분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베트남 세무상 거주자는 아래 항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월 VND 11 million
- 부양가족 공제: 월 VND 4.4 million (사전 등록 및 세무당국 제출 필요)
- 인정되는 자선·인도적 기부금
- 직원이 납부한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료
- 고용주 및 근로자가 납부한 개인연금기금 불입액 (재정부 지침에 따라 월 VND 1 million 한도)

세액 공제 (Tax Relief)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세무상 거주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외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베트남 개인소득세(PIT)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금액은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베트남 PIT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상 공제 (Tax treaty relief)

세무상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PI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율 (Tax Rates)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 월 과세표준 및 세율 (VND mil)	세율	
	거주자	비거주자
5 이하	5%	
5 초과 ~ 10 이하	10%	
10 초과 ~ 18 이하	15%	
18 초과 ~ 32 이하	20%	20%
32 초과 ~ 52 이하	25%	
52 초과 ~ 80 이하	30%	
80 초과	35%	

비근로소득 (Non-Employment Income)

비근로소득	세율	
	거주자	비거주자
사업소득	• 매매: 1% • 제조·건설·운송 및 기타: 2% • 서비스: 5%	
자본투자소득: 이자, 배당 (은행 이자 제외)	5%	
자본양도소득	순이익의 20%	
증권/주식회사 지분 양도	매출액의 0.1%	매출액의 0.1%
부동산 양도	매출액의 0.2%	
상금 소득: VND 10 million 초과분 과세	10%	
저작권·로열티/가맹권 소득: VND 10 million 초과분 과세	5%	
증여·상속 소득: VND 10 million 초과분 과세	10%	

세금 신고 및 납부

모든 납세자는 첫 번째 개인소득세(PIT) 신고 기한 이전에 **개인 납세자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소득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 등록 기한은 **연말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서 제출일 10영업일 전**까지입니다.

세금 신고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개인 납세자 코드에 따른 직접 신고**
개인은 자신의 납세자 코드로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기별 신고:** 해외 법인으로부터 베트남에 비용 청구(charge-back) 없이 해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 **연간 신고 및 출국 시 연말정산 신고:** 베트남 법인에 연말정산을 위임할 수 없는 경우
 - **발생 시 신고:** 비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베트남 법인 납세자 코드에 따른 원천징수 신고**
베트남 법인이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거나, 해외 법인으로부터 근로비용 재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베트남 법인은 원천징수세 신고를 통해 개인소득세를 대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월별 또는 분기별 신고:** 해당 연도 동안 (VAT 신고 주기와 동일하게 적용)
 - **연간 신고:** 세무연도 말에 연말정산으로 신고

신고 요건	신고 및 납부 기한
최초 등록 / 입국 등록	과세소득 최초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
부양가족 등록	직계가족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기한 10일 전, 기타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
월별 세금 신고 – 고용주 제출	다음 달 20일: 월별 신고 시
분기별 세금 신고 – 고용주 및 근로자 제출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 분기별 신고 시
연말 개인소득세 신고 – 고용주 제출	다음 세무연도 3번째 달의 마지막 날
연말 개인소득세 신고 – 근로자 제출	다음 달력연도 4번째 달의 마지막 날 또는 첫 세무연도가 입국일로부터 12개월 연속 기간인 경우 90일 이내
출국 세금 신고 – 파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출국일 전 또는 베트남에서의 파견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4. 사회·건강·실업보험(SHUI)

베트남의 의무보험은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그리고 실업보험(UI)으로 구성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사회보험(SI):** 베트남에서 근로허가서(work permit)를 보유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HI):** 베트남 근로계약을 최소 3개월 이상 체결한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실업보험(UI):** 베트남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또한, 그룹 내에서 내부 전근으로 파견된 일부 외국인 근로자와 법정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는 의무 사회보험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I/HI/UI 보험료율

베트남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합계
사회보험	8%	17.5%	25.5%
건강보험	1.5%	3%	4.5%
실업보험	1%	1%	2%
합계	10.5%	21.5%	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합계
사회보험	8%	17.5%	25.5%
건강보험	1.5%	3%	4.5%
실업보험	-	-	-
합계	9.5%	20.5%	30%

사회보험(SI), 건강보험(HI), 실업보험(UI) 기여금 산정 대상 소득에는 급여, 특정 수당 및 기타 정기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 SI 및 HI 산정을 위한 상한 급여는 정부가 정한 월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
- UI 산정을 위한 상한 급여는 지역별 월 최저임금의 20배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및 지역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며, 이를 매년 재검토합니다.

5. 부가가치세 (VAT)

적용 범위

VAT는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및 소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와 용역(해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포함)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또한 VAT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도 적용됩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 납부 시 세관 당국에 동시에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용역의 경우 VAT는 외국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메커니즘을 통해 과세됩니다.

VAT 면제

법령에 의해 규정된 특정 범주의 재화 및 용역은 VAT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세 (Output VAT)는 부과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 시 납부한 매입세(Input VAT)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요 VAT 면제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 농산물, 농업에 전용되는 원재료 및 용역
- 장례 서비스
- 주민 출자 자본 및 인도적 지원을 활용한 특정 유지보수, 수리 및 건설 활동
- 요건을 충족하는 잡지, 신문, 서적의 발행·수입·유통 활동
- 대중 여객 운송 서비스
- 연간 매출액이 VND 200 million 이하인 개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입 재화 및 용역
- 금융리스 회사가 비관세구역 기업에 금융리스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
- 인간과 관련된 보험
- 의료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및 훈련 활동
- 신문, 잡지 및 특정 서적의 인쇄 및 출판
-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활동에 따른 이자 및 특정 수수료
- 특정 증권 거래 활동, 채권 매각, 외환 거래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하여 R&D 활동, 석유·가스 분야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및 소모품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하여 기업의 고정자산 창출 목적으로 수입되는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시추기, 선박
- 금융파생상품 및 신용 서비스(신용카드 발급, 금융리스, 팩토링 포함); 담보대출 채무를 정산하기 위해 대출자의 위임에 따라 담보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임시 수입 재화
- 토지 사용권
- 기술 이전,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단, 수출 소프트웨어는 제외)
- 장신구로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파편 금(gold in pieces) 수입
-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된 상태로 수출되는 천연자원
-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방지 및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되는 특정 재화; 국경 주민의 생산 및 소비를 위한 매매·교환되는 재화

세율

VAT 신고 및 납부 대상 재화와 용역에는 세 가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회사 부담	합계
사회보험	8%	17.5%	25.5%
건강보험	1.5%	3%	4.5%
실업보험	1%	1%	2%
합계	10.5%	21.5%	3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제174/2025/ND-CP호 시행령(2025년 6월 30일자)을 공표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10% VAT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2% VAT 인하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VAT 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비현금 결제 증빙, 세관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 및 용역이라 하더라도 VAT 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서비스
- 해외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IP) 이전
- 해외에서의 자본 이전, 신용 제공, 증권 투자
- 파생금융서비스
- 국외로 제공되는 국제 우편·통신 서비스(비관세구역 내 조직·개인에게 제공되는 우편·통신 서비스 및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고정가 선불전화카드 제공 포함)
- 수출용 제품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된 천연자원·광물인 경우
- 비관세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
-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담배·주류·맥주 (이 경우 수출 시 매출세(VAT Output)는 계산하지 않으나 매입세(VAT Input)는 공제 불가)
- 국내에서 구매한 석유 및 가스를 비관세구역 기업의 자동차에 판매하는 경우
- 자동차를 비관세구역 내 조직·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 비관세구역 내 조직·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주택·회의실·사무실·호텔·창고 임대, 직원 운송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단, 산업용 급식 및 비관세구역 내 식음료 서비스는 제외))

세액 계산 방법

일반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VAT 납부 의무는 해당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재지의 지방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수입 물품에 대한 VAT 납부 의무는 수입 시 세관 당국이 징수합니다.

VAT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공제 방식(Credit method): 매입세액(Input VAT)을 매출세액(Output VAT)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 직접 방식(Direct method):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법정 인정된 간이 VAT율(deemed VAT rates)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세율

VAT 신고 및 납부 대상 재화와 용역에는 세 가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재화 및 용역의 종류
0%	2025년 7월 1일부터 내국 수출 재화 또한 0% VAT가 적용됩니다.수출 재화에는 베트남에서 해외 기관·개인에게 판매되어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재화, 내국에서 비관세구역(non-tariff zone) 내 기관에 판매되어 해당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화가 포함됩니다.;
	수출 용역에는 해외 기관·개인에게 직접 제공되어 베트남 외에서 소비되는 용역, 비관세구역 내 기관에 직접 제공되어 해당 구역에서 소비되며 수출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용역이 포함됩니다;
	국제 운송 서비스;
5%	항공 및 해운 서비스(해외 법인에 직접 제공되거나 대리점을 통해 제공되는 경우 포함);
	출국 절차를 마친 개인(외국인 및 베트남인 포함)에게 검역구역에서 판매되는 재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재화
10%	표준 VAT 세율은 위에서 언급된 항목을 제외한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제174/2025/ND-CP호 시행령(2025년 6월 30일자)을 공표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10% VAT 세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2% VAT 인하를 규정하였습니다.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VAT 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비현금 결제 증빙, 세관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 재화 및 용역이라 하더라도 VAT 0%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보험사에 대한 재보험 서비스
- 해외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IP) 이전
- 해외에서의 자본 이전, 신용 제공, 증권 투자
- 파생금융서비스
- 국외로 제공되는 국제 우편·통신 서비스(비관세구역 내 조직·개인에게 제공되는 우편·통신 서비스 및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고정가 선불전화카드 제공 포함)
- 수출용 제품이 가공되지 않았거나 단순 가공된 천연자원·광물인 경우
- 비관세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재화·용역
-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담배·주류·맥주 (이 경우 수출 시 매출세(VAT Output)는 계산하지 않으나 매입세(VAT Input)는 공제 불가)
- 내국에서 구매한 석유 및 가스를 비관세구역 기업의 자동차에 판매하는 경우
- 자동차를 비관세구역 내 조직·개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 비관세구역 내 조직·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주택·회의실·사무실·호텔·창고 임대, 직원 운송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단, 산업용 급식 및 비관세구역 내 식음료 서비스는 제외))

세액 계산 방법

일반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VAT 납부 의무는 해당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재지의 지방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수입 물품에 대한 VAT 납부 의무는 수입 시 세관 당국이 징수합니다.

VAT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공제 방식(Credit method): 매입세액(Input VAT)을 매출세액(Output VAT)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 직접 방식(Direct method):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법정 인정된 간이 VAT율(deemed VAT rates)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함

공제 방식(Credit Method)

공제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및 관련 서류를 완비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간 VAT 과세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기업
- 그 외의 경우 중 자발적으로 공제 방식에 따라 VAT 신고를 등록한 기업;

공제 방식에 따른 VAT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VAT 납부금액 = 매출세액(Output VAT) – 매입세액(Input VAT)

그중:

- 매출세액(Output VAT) 은 VAT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의 총 VAT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과세가격에 적용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재화 및 용역의 과세가격은 VAT를 제외한 판매가격입니다.
 - 특별소비세(SST) 가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과세가격은 SST를 포함하되 VAT는 제외한 가격입니다.
 - 자원세(EPT) 가 적용되는 재화의 경우, 과세가격은 EPT를 포함하되 VAT는 제외한 가격입니다.
 - 수입 재화의 경우, 과세가격은 수입과세가격 + 수입관세 + 특별소비세(해당 시) + 환경보호부담금(해당 시) 의 합계액입니다.
- 매입세액(Input VAT)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발행된 VAT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VAT 금액
 - 수입 재화의 VAT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외국인 계약자 대신 납부한 VAT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의 공제 관련 원칙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VAT	매출세금	해당 매입세금
비과세	해당 없음	공제 불가
신고 및 납부 불필요	해당 없음	공제 가능
과세 (0%)	해당 없음	공제 가능
과세 (5%, 10%)	과세	공제 가능

재화, 용역 또는 고정자산이 과세대상 재화·용역과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생산·거래에 모두 사용되는 경우,과세대상 재화·용역의 생산·거래에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과 비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구분하여야 합니다.이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재화·용역(또는 VAT 신고가 필요한 재화·용역)의 매출액 비율을 전체 매출액(모든 재화·용역의 총매출액)에 곱하여 산출한 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청구하기 위해 납세자는 각 재화·용역의 유형별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재화·용역	수입 재화	외국인 계약자 대납금액
VAT 인보이스	해당		
VAT 납부 영수증		해당	해당
(*)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	해당	해당	해당
세관신고서		해당	

직접 방식(Direct Method)

직접 방식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연간 VAT 과세 매출액이 10억 동 미만인 기업(단, 자발적으로 공제 방식을 등록한 경우는 제외)
- 적절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기업, 또는 투자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외국 법인·개인이 베트남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및 가계사업자
- 금, 은, 보석류 거래업을 영위하는 기업

직접 방식에 따른 VAT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VAT 납부금액} = \text{매출액(Revenue)} \times \text{VAT 세율(VAT Rate)}$$

그중, 적용되는 VAT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의 유통 및 공급: 1%
- 용역 및 자재를 제외한 건설업: 5%
- 제조, 운송, 상품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자재를 포함한 건설업: 3%
- 기타 경우: 2%

금, 은, 보석류 거래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납부해야 할 VAT는 부가가치의 10%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는 정식 VAT 세금계산서 또는 납부영수증·지급증빙에 의해 입증된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VAT 신고방식을 선택한 경우, 해당 방식은 최소 2개 과세연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VAT 환급 (Tax Refund)

세무당국으로부터의 VAT 환급은 아래의 특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 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미공제 매입세액을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향후 매출세액과 상계해야 합니다. 수입 후 재수출된 재화에 대해서는 VAT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이 가능한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업체로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VND 300 million을 초과하는 경우 (단, 관련 요건 및 환급 한도 금액 조건 충족 시);
- 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납세자의 신규 설립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 개시 전 투자단계에서 누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3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요건을 충족하는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 프로젝트 또는 투자단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VAT 환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및
- 특정 ODA 프로젝트, 외교 면세,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구매한 재화를 해외에서 소비하는 경우
- 5%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생산 및 용역 제공에 대한 VAT 환급:
 - 사업장이 5% VAT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만 생산하거나 용역만 제공하고, 12개월 연속 또는 4개 분기 연속 후 미공제 매입세액이 3억 동(VND 300 million) 이상인 경우, VAT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로 다른 VAT 세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규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

VAT 공제 및 환급에 대한 금지 행위

금지되는 행위에는 세금계산서의 매매, 불법 세금계산서/서류의 사용, 허위 거래의 생성, 영업 중단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효한 경우 제외),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의 미전송, 세금계산서 정보시스템의 위조 또는 불법 접근, 세금상의 이익을 위한 뇌물 또는 사기, 세금 회피 또는 편취 목적의 특수관계자 간 담합 등이 포함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Invoicing)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의 시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검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 with verification code)
- 검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 without verification code)

검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및 사업조직은 재화/용역을 판매할 때, 각 거래의 금액과 관계없이 검증코드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일부 예외의 경우에만 검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업은 당국의 웹 포털을 통해 등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세무당국으로부터 검증코드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이 허용된 기업은 전력, 석유, 통신, 운송, 금융기관, 보험, 전자상거래, 슈퍼마켓 등 특정 경제 부문에 속한 기업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기업들입니다. 기업은 세무당국에 등록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외국계약자세 (FCWT)

납세자

외국계약자세(FCWT)는 (i) 베트남 측 당사자와 계약/합의서를 체결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 조직 또는 개인(외국 주계약자), 또는 (ii) 계약 범위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외국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 하도급자에게 적용됩니다.FCWT는 일반적으로 법인세(CIT) 와 부가가치세(VAT) 를 모두 포함하는 세금 징수 메커니즘이며, 외국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경우 개인소득세(PIT) 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 범위

	FCWT과세대상	FCWT 비과세 대상
서비스	베트남 내에서 제공되거나 소비되는 용역	베트남 외에서 제공되고 소비되는 용역
화물	용역이 수반된 재화의 공급 인도지가 베트남 내에 있는 재화의 공급	용역이 수반되지 않으며 인도지가 해외 또는 베트남 국경 밖에 있는 재화의 공급
기타	• 건설 및 설치 • 이자소득 • 사용료 • 상표권 • 위약금/손해 배상금 • 운송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유가증권 양도	

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

외국계약자세(FCWT) 신고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 직접방식(Deemed method); (ii) 혼합방식(Hybrid method); 및 (iii) 신고방식(Declaration method)입니다.

직접방식은 외국계약자가 별도의 조건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혼합방식과 신고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계약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183일 이상임
-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예: 프로젝트 사무소 등)을 보유함
- 베트남 회계기준(VAS, 간이형 또는 정식형)을 적용함

세율

직접방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사례에 대해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번호	업무항목	직접방식	신고방식	혼합방식
1	세금 신고 & 납부의무	베트남 당사자	외국인 계약자	외국인 계약자
2	준수 일정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VAT 신고	•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 월간	월간	월간
	CIT 신고	•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 월간	분기별	•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 월간
	세금 확정 신고	계약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및 • 계약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3	세금계산			
	VAT	$VAT = \text{과세매출} \times \text{간주세율}$	$VAT = \text{매출VAT} - \text{매입VAT}$	$VAT = \text{매출VAT} - \text{매입VAT}$
	CIT	$CIT = \text{과세매출} \times \text{간주세율}$	$CIT = \text{과세소득} \times \text{CIT세율}$	$CIT = \text{과세매출} \times \text{간주세율}$
4	감사	해당 없음	의무 사항 아님	의무 사항 아님
5	수익/이익 송금	송금 전에 세금이 원천징수됨	구체적인 요건 없음	송금 전에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별도의 요건 없음

소득의 성격	간주 VAT 세율	간주 CIT 세율
베트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상품에는 베트남 내 내국 수출입 및 수입, 베트남 내 상품 유통이 포함되며, 판매자가 베트남 내 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면세	1%
서비스	5%	5%
식당, 호텔, 카지노 관리 서비스	5%	10%
자재, 기계 또는 장비를 공급하지 않는 건설·설치	5%	2%
자재, 기계 또는 장비를 공급하는 건설·설치	3%	2%
운송	0% 또는 3%	2%
대출이자	면세	5%
로열티 소득	면세, 2% 또는 5%	10%
금융파생상품	면세	2%
유가증권 양도	면세	0.1%
기타	2%	2%

* 2025년 7월 1일부터 일부 서비스는 새로운 VAT 법에 따라 3%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외국계약자세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PE)을 보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디지털 비즈니스 및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에서 외국계약자세(FCWT)의 적용을 받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세무총국 포털을 통해 분기별로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코드가 부여됩니다.

외국기업이 베트남에서 직접 세금등록,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기업과 거래하는 베트남 측 당사자(예: 베트남 고객, 상업은행, 결제중개회사 등)는 대신 세금신고를 하거나 세무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 세무총국(GDT)은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한 세금신고 및 납부 전용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하였으며, 해당 웹사이트에는 등록된 외국기업 목록이 공개 및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등록된 외국기업은 148개사입니다.

제48/2024/QH15호 부가가치세법 (2025년 7월 1일 발효)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납세자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공급자(Foreign suppliers):**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없이 베트남의 조직 또는 개인과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외국 플랫폼 운영자(Foreign platform operators):** 외국 디지털 플랫폼을 관리하며 외국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
- 베트남 내 사업조직 (Vietnamese business organizations):** 공제방식(VAT credit method)을 적용하며 외국공급자로부터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공급자를 대신하여 세금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
- 전자상거래 플랫폼 (E-commerce trading platforms):** 결제, 세금신고 및 납부 기능을 보유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국 또는 국내 조직으로,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 및 가계사업자를 대신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할 의무를 가짐

제48/2024/QH15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PE)이 없는 외국공급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B2B 또는 B2C 형태로 베트남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국내 공급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과 동일한 VAT 세율(표준세율 10%)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공급자가 베트남 세무당국에 직접 세금 등록 및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외국공급자가 발행한 세금 납부 증빙서류는 베트남 내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VAT 공제)**를 위한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

베트남은 대부분의 협정이 OECD 모델 협정을 따르는 포괄적인 조세조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부터의 구제를 제공하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거주기업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제한하며, 한 국가의 거주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차별적인 과세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베트남의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TA에 따른 세금 감면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 외국 납세자는 세금 납부기한 최소 15일 전에 베트남 세무당국에 특정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에는 일반적으로 거주자 증명서가 포함되며, 이는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공증되어야 하며, 다양한 베트남 정부 양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위의 법정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납세자는 세금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통지를 제출하면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세무당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세금 감면을 승인하는 결정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발행합니다.

서류는 세금이 납부되거나 베트남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또는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된 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세금 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의 국가 및 지역과 약 80개의 DTA를 체결하였습니다.

7. 기타 세목

특별소비세 (SST)

특별소비세(SST)는 특정 재화의 생산 또는 수입과 특정 용역의 제공에 부과되는 일종의 개별소비세입니다.SST 납세의무자는 SST 과세 대상 재화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및 과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과세가격

일반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과세가격은 SST 및 EPT(환경보호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입니다.수입 재화의 경우, 과세가격은 과세가격(관세평가가격)에 수입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세액공제

SST 과세 대상 원재료로부터 SST 과세 대상 재화를 생산하는 납세자는 수입 시 또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시 납부한 SST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납세자가 수입단계와 판매단계 모두에서 SST를 납부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SST는 판매 시 납부해야 할 SST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율

SST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화 / 용역	세율* (%)
담배 및 기타 담배식물에서 유래된 제품	75
증류주 / 포도주	
• 알코올 도수(ABV) 20° 이상 증류주 / 포도주	65
• 알코올 도수(ABV) 20° 미만 증류주 / 포도주	35
맥주	65
24인승 미만 자동차	10-150
125cm³ 초과 배기량의 오토바이	20
항공기 / 요트	30
에어컨 (90,000 BTU 미만)	10
휘발유	7-10
트럼프 카드	40
제지(지전 등 제물용 종이)	70
댄스클럽업	40
마사지, 노래방, 베팅(도박)업	30
카지노업, 전자식 카지노 게임업	35
골프장업	20
복권업	15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특별소비세(SST) 법이 시행되며, 과세 대상 재화·용역 및 세율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당분 함량이 100ml당 5g을 초과하는 청량음료의 과세 추가, 담배 제품에 대한 복합 과세 기준의 도입, 그리고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의 범위 축소 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세(EPT)

환경보호세(EPT)는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재화의 생산 및 수입에 부과됩니다. 환경보호세 납세의무자는 환경보호세 과세 대상 재화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조직, 가구, 개인을 포함합니다.

세율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화	단위	세율 (VND)
휘발유, 경유, 윤활유 등	litre/kg	1,000 – 4,000
석탄	ton	15,000 – 30,000
HCFC solution	kg	5,000
플라스틱 bags	kg	50,000
Herbicides restricted from use	kg	500
Termiticides restricted from use	kg	1,000
Forest product preservatives restricted from use	kg	1,000
Storehouse disinfectants restricted from use	kg	1,000

Natural Resources Tax

Natural resources tax is an indirect tax, payable by industries exploiting 베트남's natural resources including petroleum, minerals, natural gas, forestry products, and natural water.

The tax rates vary depending on the natural resource being exploited and range from 1% to 40%, and are applied to the production output at a specified taxable value per unit.

Property Tax

Foreign investors generally have to pay rental fees for land use rights to local authorities. The range of rates varies depending on many factors (location, infrastructure, etc.). Owners of houses and apartments have to pay non- agricultural land use tax with tax rates ranging from 0.03% to 0.15%.

II. 관세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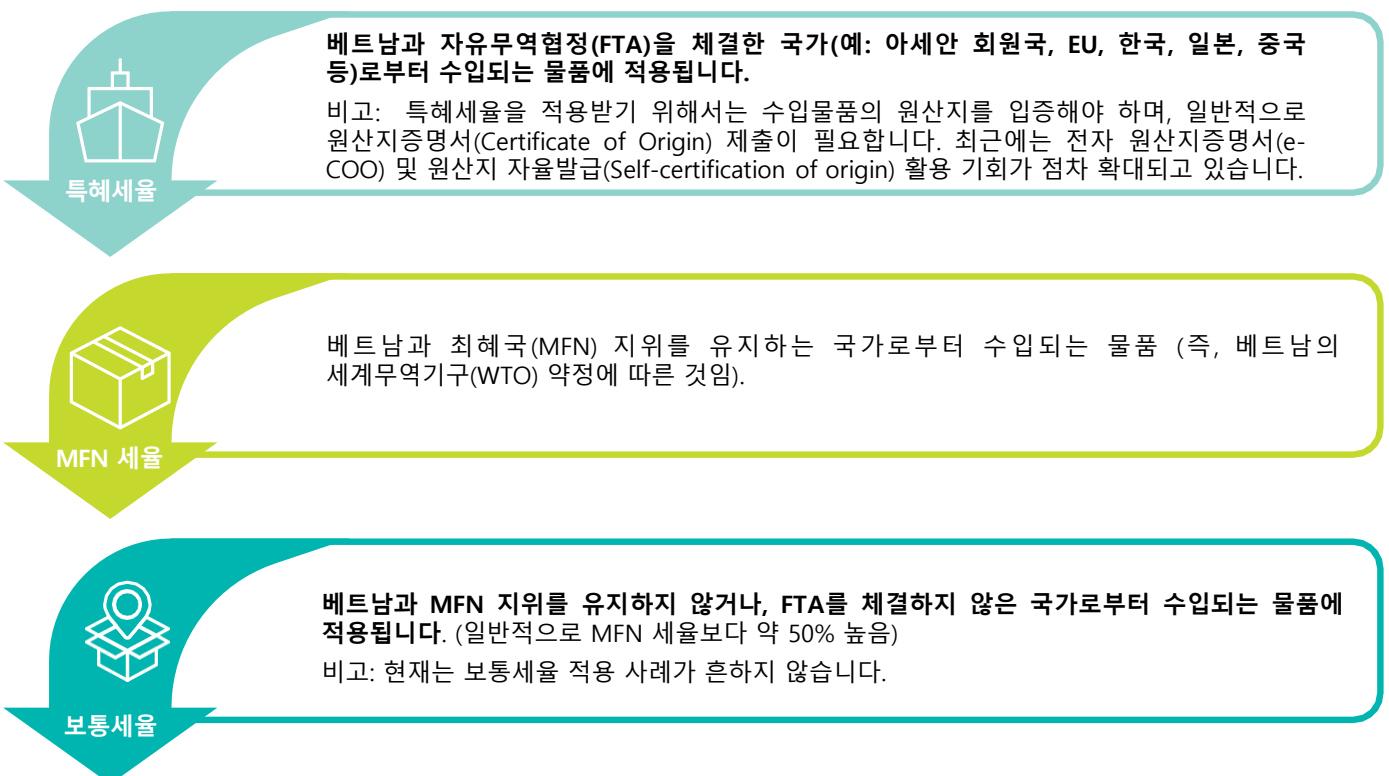
개요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WTO의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관 평가(Customs Valuation) 협정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협정을 국내 법률에 도입한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베트남은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품목분류를 위한 HS 체계(Harmonized System, HS)를 채택하여, 세관 평가 및 수출입 통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

일반적으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에는 수입관세와 수입 VAT가 부과됩니다. 적용 세율은 수입물품에 인정된 HS 코드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주요 관세 구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관세 – 면제 제도: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세관 당국 포함)는 수출용 완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품, 기계 및 장비의 수입 시 수입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따를 수 있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가공기업(EPE)	기계, 장비, 고정자산을 포함한 수입 물품은 수입관세와 수입 VAT 납부 없이 수입할 수 있음
수출제조(Manufacturing for Export)	수출 제조 활동을 위한 수입 원자재는 수입관세와 수입 VAT가 면제될 수 있음
위탁가공/처리(Contract Manufacturing/Processing)	수입 원자재, 차용/임차한 기계 및 장비는 수입관세와 수입 VAT가 면제될 수 있음

앞서 언급한 제도하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특히 면세 물품 관리 및 연간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세관 준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금흐름 개선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점점 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FIE)들이 이러한 모델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 가능한 경우 수입업자는 베트남 내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인센티브 투자 프로젝트(예: 프로젝트 건설 단계에서의 자재 수입)에 사용되는 물품, 또는 과학·기술·혁신 및 디지털 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리스트(import duty exemption list)”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세관가격

베트남은 WTO 과세가격협정을 세관법에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세관은 수입물품의 세관가격 산정 시 매매 당사자 간 실제 지급 또는 지급의무가 있는 가격(“거래가격”)을 기본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실무적으로 베트남 세관은 기준가격(benchmark values)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신고가격은 이에 따라 검증됩니다. 수입 시 신고가격이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수입업자는 신고가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식적인 “가격 협의(Price Consultation)”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 가격은 국경 통관 시점 또는 사후통관심사(Post-clearance Audit)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 제기됩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가 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구매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협상·합의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베트남 세관은 규정된 다른 과세가격 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세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수입관세 및 기타 국경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수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세관가격의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베트남 세관 본부로부터 사전 세관가격 판정(advanced Customs valuation rulings)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정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간 유효합니다.

수출 물품의 경우, 베트남 세관은 일반적으로 국경 시점에서의 계약 판매가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출관세 부과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가격이 세관의 기준가격에 따라 검증됩니다.

HS Codes

베트남은 세계관세기구(WCO)가 발표한 HS Codes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의 관세코드는 다른 HS 협약국과 6자리 수준까지 일치합니다.

세관신고서에는 HS 코드를 8자리 수준으로 기재해야 하며, 품목분류는 물품의 규격·기능에 따라, WCO 가이드라인, 베트남 세관관세표, 그리고 베트남 세관이 특정 수출입 물품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발행한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HS 코드 판정의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관 관세가 적용됩니다, 수입/수출 허가 규제를 위반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거부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수출자의 세관 준수 등급이 하락합니다 – 이는 통관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세관 본부는 HS 코드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최대 3년간 유효한 사전 HS 판정(advanced HS rulings)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 적용에 있어 확실성을 확보하려는 기업에게 강력히 권장됩니다.

수입관세 환급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한 수입관세 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 수입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경우
- 수입 후 사용되지 않아 재수출해야 하는 원자재
- 내수 판매용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 원자재(해외 수출 또는 수출가공구역(EPZ) 반입 포함)

수출 매출에 대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VAT 환급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 절차를 베트남 세관의 현행 규정에 따라 완료함, 및
- 회사는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최소 VND 300 million 이상의 미공제 매입세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 이는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월 기준이고, 분기별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분기 기준임.

수출관세 :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일반 물품은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물품(예: 천연자원, 광물, 농산물 등)은 최대 40%의 수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EO)

신청 대상:

베트남에서 AEO로 신청할 수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부가 공표한 하이테크 기업을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2년 이상 수출입 활동을 영위한 기업
- 베트남에서 2년 이상 운영한 통관대행업체(Customs brokerage companies)
- 총리가 승인한 특별투자프로젝트

혜택

AEO로 인정받을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이 포함됩니다:

- 24/7 세관 지원을 통한 통관신고 및 통관 절차에서의 최고 수준 우선권 부여됨
- 거의 100% '그린레인(Green-lane)' 통관 적용: 서류/물리적 검사가 없어 통관대행 수수료 및 체선료가 크게 절감됨
- 미완성 신고서를 통한 통관 허용(추후 보완 가능함)
- 수입통제 시 우선권 부여: 수입통제 심사 대기 중에도 AEO 사업장/창고에 물품 보관 가능함
- 내국통관(On-the-spot) 신고 완료 전에 물품 인도 가능함
- 월 내 다수 선적분에 대해 월 1회 통합 신고 가능함
- 수입관세: 선(先) 환급 후(後) 심사 방식 적용 가능함
- 관세 납부 기한을 익월 10일까지 연기할 수 있음
- 사후통관심사(PCA): 최대 3년에 1회, 반드시 AEO 사업장에서 수행됨
- 국경 간 상호인정 프로그램: 당국 및 역내 다른 AEO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인증됨

자격 요건

AEO 지위를 신청하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수출입 실적 기준(과학기술부가 공표한 하이테크 기업은 예외):
 - 업종 유형에 따라 연간 수출입 실적이 USD 30 million ~ USD 100 million 범위에 있어야 함
 - 통관 대행업체는 연간 최소 20,000건 이상의 신고 건수를 등록해야 함
- 베트남 세관, 세무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당하게 준수해야 함
- 세무 및 세관 등록 및 절차에 전자신고를 적용해야 함
- 모든 수출입 활동에 대해 은행을 통한 대금 결제를 진행해야 함
- 공급망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적격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종합적인 기업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함

세관 조사 및 감사

세관 조사와 감사는 기업이 세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세관 당국에 의해 수행됩니다.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입·수출 물품이 세관 통제를 통과하기 전에 국경 통관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감사(통상적으로 '사후통관심사(Post-clearance Audit, PCA)'라고 함)는 세관 당국 사무소나 기업의 사업장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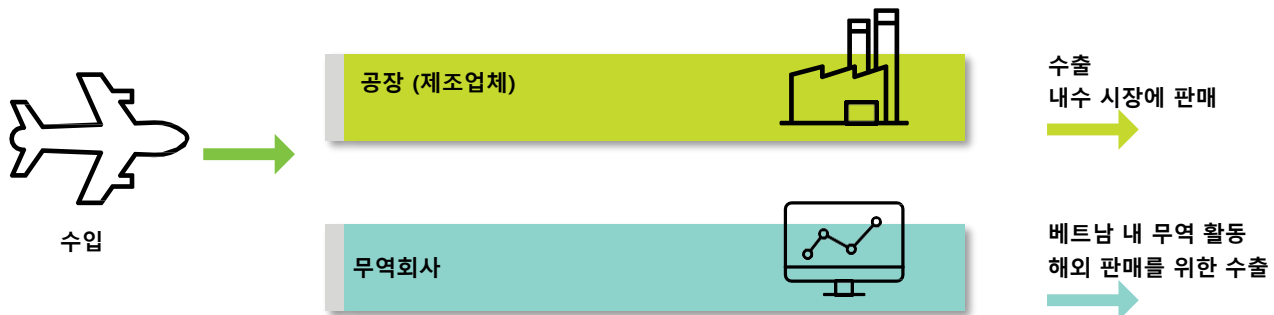
수출입 국경 지점에서의 세관 조사 :

수출입 시점의 국경 통관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세관 검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고위험(Customs high-risk) 영역에 집중됩니다.

- HS 품목분류
- 과세가격 산정
- 수출입 통제 관련 위험에 노출됨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
- 세관 신고 등록(베트남 세관에 수출입 신고서를 등록할 당사자의 권한 포함)

고위험 세관 영역

아래 도표는 국경 지점에서 세관 점검·조사 시 흔히 문제 되는 쟁점들을 보여줍니다:



HS Code 분류	• HS Code 분류에 대해 베트남 세관이 발행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세관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물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점검 대상이 됨.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거래에서의 수입 물품 가격이나, 베트남 세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상의 '기준가격(benchmark values)' 범위를 벗어난 신고가격은 모두 베트남 세관과의 공식적인 '가격 협의(Price Consultation)'로 이어질 수 있음.
품목별 정책	• 베트남 관세율표(Chapter 84, 85)에 해당하는 중고 도구/장비의 수입 • 수입허가 대상 물품의 수입 / 적합성 인증서가 요구되는 물품의 수입
FTA 특혜세율 적용	• 원산지증명서(Proof of Origin, "P/O")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세관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간 정보의 일관성을 확인함

사후통관심사 (PCA)

수입 또는 수출 활동에 관여하는 기업은 PCA 대상이 됩니다. PCA의 선정, 빈도 및 범위는 세관의 위험관리시스템과 베트남 세관이 부여한 기업의 통관 준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험 등급이 높은 기업은 국경에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PCA 빈도 또한 증가합니다.

베트남 세관이 PCA 과정에서 흔히 문제 삼는 통관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이에 한정되지 않음):

- 수출가공기업(EPE), 수출제조(Export Manufacturing) 또는 수출가공활동(Export Processing Activities)을 위해 면세로 수입한 재고/물품의 관리
- 수출 물품에 대한 “베트남산” 원산지 신고(수출 신고서상의 원산지 신고, 또는 수출 물품에 대해 발급받은 비특혜·특혜 원산지 증명서 포함)

또한 베트남 세무 당국과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 세관은 PCA에서 중대한 불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를 세무 당국에 통보하여 법인세 측면에서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은 효과적인 내부 준수 절차를 마련하여 통관 준수 의무를 관리하고, 세관 관세 환수(claw-back) 또는 제재 위험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5장: 외환 관리



외국인의 간접투자 자본은 반드시 VND으로 환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해외 송금을 위하여 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베트남 영토 내에서는, 특정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거래(예: 공급, 지급, 광고, 견적, 가격 책정, 상품·서비스 가격 또는 계약·합의의 가치 변동/조정 등)을 외화로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급여, 상여금 및 수당을 외화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베트남 내의 이자부 외화 계좌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가공구역(EPZ)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 수입, 지급 및 환전 거래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의 지정 은행에서 국가은행 (State Bank)의 허가 없이 외화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외화 계좌는 경상거래(current account transaction) 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본 거래(예: 합법적 자본·이익·수익의 해외 송금, 중장기 해외 차입금 상환, 외화의 인출 및 예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외화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Contact us



Pham Van Thinh
Country Managing Partner
Deloitte Vietnam
thpham@deloitte.com



Tran Thi Thuy Ngoc
Partner
Growth Leader
Deloitte Vietnam
ntran@deloitte.com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Deloitte Vietnam
mbui@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Tax & Legal Growth Leader
Deloitte Vietnam
avo@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Deloitte Vietnam
tmccllland@deloitte.com



Vu Minh Ngoc
Tax Partner
Business Process Solution Leader
Deloitte Vietnam
ngocmvu@deloitte.com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